正祖朝 奎章閣의 圖書編纂 및 刊行

—주로 書誌學史的 視覺에서의 考察—

姜 順 愛*

머 리 말
一. 奎章閣의 기능
1. 정치·행정적 기능
2. 학술·문화적 기능
3. 도서관적 기능
二. 도서의 편찬 및 간행
1. 도서의 편찬
(1) 御 製
(2) 御定書 및 一般書
2. 도서의 간행
三. 편찬·간행서의 주제별 분석
1. 經 部
2. 史 部
3. 子 部
4. 集 部
맺 음 말

머 리 말

왕정국가에서의 도서의 편찬 및 간행은 국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正祖朝는 조선왕조 근세문예부흥기라 일컬어지고 있다. 正祖는 英祖朝에서 싹이 튼 문예진흥의 토대[1] 위에서 찬란한 문화의 극성기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많은 官纂書가 각 主題分野에 걸쳐 다양하게 편찬·간행되었다.

正祖는 즉위후 崇儒重道와 繼志述事를 바탕으로 하면서[2] 혁신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奎章閣을 설립하고 정치·행정, 학술·문화 및 도서관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렇듯 繼述革新의 취지아래 여러 기능을 수행한 기관이었던 만큼 奎章閣에 관한 연구도 여러 시각에서 진행되어 왔다. 정치·행정적, 학술·문화적, 도서관적 시각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여러 편이지만, 학술·문화적 기능 중에서 도서의 편찬 및 간행을 다룬 書誌學史的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784년(正祖 8)에 완성된 《奎章閣志》 및 《朝鮮王朝實錄》등의 관계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奎章閣의 기능을 고찰한 다음 도서의 편찬 및 간행, 편찬·간행서의 주제별 분석의 순으로 살펴 보겠다. 본고가 書誌學的 측면에서 奎章閣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

*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博士課程

(1) 拙稿, 1982, 〈朝鮮 英祖朝의 圖書編撰 및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pp. 1-2

(2) 鄭亨愚, 1970, 〈正祖의 文藝復興政策〉《東方學志》 11 p. 148

一. 奎章閣의 기능

奎章閣은 1776년(正祖 즉위)에 설립되어 1784년 《奎章閣志》가 완성되기까지 정치·행정, 학술·문화 및 도서관의 복합적 기능을 지닌 기관으로 성장하여 正祖朝 문예진흥의 모체가 되었는데, 이들 기능을 분석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행정적 기능

正祖는 時派와 僻派로 대립된 정쟁의 와중에서 등극하였기 때문에 奎章閣 설립의 기치로써 崇儒重道와 繼志述事를 표방하였지만 초기는 왕권강화와 권력기반의 확보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3] 그리하여 正祖는 都承旨, 訓鍊大將, 宣惠堂上, 弘文提學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閣職을 兼帶하였던 洪國榮에게 軍國機務로부터 臺閣言議 및 兩銓政注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4] 정적인 僻派의 제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779년(正祖 3) 9월에 洪國榮이 실각하게 되자 奎章閣도 점차 초기의 제도 하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弘文館·藝文館·承政院·司憲府·司諫院·經筵·成均館·春秋館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였다.

이들 기능이 흡수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弘文館·藝文館의 일을 수행하였으니 獻議와 箚疏이다. 獻議는 文任이 주관하던 일인데 1780년(正祖 4)부터 奎章閣 提學이 동참하도록 하였다. 館閣의 議論事는 時原任이 모두 同席하게 되며, 이때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箚疏로 의견을 陳聞하게 하였다.[5]

둘째, 承政院의 업무중에서는 起居와 代撰의 일을 행하였다. 起居는 承政院의 중요한 일로[6] 중도에 폐지되고 別軍職이 대행하였던 것인데, 1781년 閣臣들을 참여시키고[7] 1783년에 그 폭을 넓혀 正朝·冬至 및 誕日·慶禮에도 時原任이 모두 進參하게 하였다.[8] 王言代撰은 1781년부터 內閣이 대행하였다.[9] 이는 奎章閣 閣臣의 경우 直提學 이하가 外知製敎

---

(3) 《奎章閣志》(完成本) 跋文 ; 「……是閣也 遠稽宋明故事…… 至於深鑑乎左賢右戚之害 而思得忠賢以自近 外假禮貌 內寄腹心……」

(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 京都下 弘文館條 ; 「及上御極一歲中超至宰列 以知申事兼宿衛大將 面手握重兵 長處禁中 凡軍國機務臺閣言議兩銓政注皆先就決 然後方上徹 自上公卿百執事至岳牧庶官少有違拂 奇禍立至 擧世惴惴」. 金龍德, 1967, 〈奎章閣考 一設立事情을 中心으로一〉 서울 中央大學校《論文集》 pp. 223-228에서 이때의 사정을 좀더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5) 《奎章閣志》(完成本) 院規第7 獻議條

(6) 《燃藜室記述》 別集 권6 官職典故 承政院

(7) 《奎章閣志》(完成本) 院規 第7 起居중 辛丑(正祖 5년) 敎書 ; 「…承旨起居之制 中廢已久 別軍職至今遵行……此後當直閣臣 每日朝夕問安 一依政院古規」

(8) 윗책 癸卯(正祖 7년) 敎書 ; 「…此後無論正朝冬至及誕日慶禮 時原任皆令進叅 并著爲式」

(9) 윗책 代撰 辛丑(正祖 5년) 敎書

의 職을 겸하므로[10] 皇明太學士 代撰綸綍之制와 唐宋學士 承召視草之制를 모방하여 諭書를 찬진하게 한 것이다.[11]

세째, 1781년 2월 丙辰에 敎書를 내려[12] 兩司의 일을 대행케 하였으니 奏啓의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奏啓는 草記·啓辭·啓目·狀啓의 형식으로 그 의견을 稟奏하는 것이다.[13]

네째, 1781년 2월 壬申에 領議政 徐命善의 上奏에 의해 閣臣이 經筵官을 兼帶하게 되고[14] 講讀과 論思에 참여하였다.[15]

다섯째, 成均館에서 행하던 賀箋 儀式을 模襲하여 1781년부터 閣臣들에게 進箋을 행하도록 배려하였다.[16]

여섯째, 1781년 3월 癸未부터 春秋館의 직을 겸하여 日曆을 작성하였다.[17]

이와같이 國政論議·王命出納·人事權·製述權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閣臣들은 正祖朝 새로운 사대부 계층을 형성하여 즉위초부터 구상된 崇儒重道의 정치 실현에 주축이 되었다.

2. 학술·문화적 기능

奎章閣은 右文政治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차츰 학술·문화적 기능의 폭을 넓혀 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招啓文臣과 檢書館 制度 및 도서의 편찬·간행을 들 수 있다.

우선 招啓文臣制度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제도는 국초의 專經之規와 月課之式이 있어도 명목과 실상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文臣勸課를 위해 湖堂의 폐단을 일부 시정·보완하고[18] 明朝의 文華之制를 상고하여 文風振作과 人才培養 및 科文改革을 위한 터전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文臣의 抄啓는 內閣이 주관하게 하고, 講製人員은 槐院文臣으로서 參上·參下에 관계없이 政府가 상의하여 나이 37세 이하로 抄啓하고 40세에 許免하였다.[19] 이들 文臣은 殿講·製述·祭官·試射에 참여하지 않고[20] 오로지 講製에만 몰두하게 하였다. 講

---

(10) 《大典會通》(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弘文館 ;「知製敎를 副提學以下의 官員이 兼任하는 것을 內知製敎라 稱한다. 大提學이 吏曹判書와 相議하여 六品以上의 官員으로써 別途로 候補者를 抄錄上奏하여 任命된 것을 外知製敎라 稱한다. 外知製敎는 正三品 通政大夫의 品階에 이르기까지 兼任하며 奎章閣의 直提學以下의 官員은 現任·前任을 莫論하고 또한 모두 外知製敎를 兼任한다.」

(11) 《奎章閣志》(完成本) 院規第7 代撰條

(12) 《正宗實錄》卷11 正祖 5年 2月丙辰條

(13) 《奎章閣志》(完成本) 院規第7 奏啓條

(14) 《內閣日曆》제 8책 正祖 5年 2月 29日 ;「領議政徐命善曰 內閣旣是備顧問掌詞命之地 則經筵兼帶館閣宜無異同 以此定制 似好矣」

(15) 《燃藜室記述》別集 권7 官職典故 經筵

(16) 《奎章閣志》(完成本) 院規第7 進箋條

(17) 윗책 日曆條

(18) 《文臣講製節目》1a-1b;「傳曰……今欲倣古設敎 以爲作成之道則 湖堂太簡 徒啓奔競之風 知製稍氈反歸濫屑之科 若就文臣堂下中 限其年 廣其選 月講經史 旬試程文 月終聚而考之 較勤慢 行賞罰 未必下爲振文風之一助…」

(19) 《奎章閣志》(再草本) 培養第8 抄啓條

(20) 《奎章閣志》(完成本) 敎習第6 抄啓條

製는 經書와 史記를 講하는 試講과 이를 講한 후에 製述을 하는 試製가 있다. 試講의 科目은 大學·論語·孟子·中庸·詩傳·書傳·周易·史記이며, 講의 次序는 經書가 끝난 후에 史記를 講하도록 하였다.[21] 講製時 試官은 奎章閣 閣臣 가운데 선임된 2인이 전관하며, 試講은 10일전과 20일후에 摛文院에서 시행하고, 試製는 20일후에 1회 시행하였다.[22] 講製에 왕이 親臨할 때는 親臨試講儀와 親臨試製儀에 따라 그 儀式을 행하였으며,[23] 講製의 결과를 考課 하여 등급을 정하고, 우수한 자는 加資하였으며 미달된 자는 推考하거나 禁推하였다.[24] 이와같이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 배출된 招啓文臣은 奎章閣 閣臣을 도와 正祖朝 文風振作에 일익을 담당했고, 科文改革 및 人才養成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다음은 檢書官제도를 보기로 한다. 正祖는 등극후 1777년(正祖 1) 5월 丙寅 庶孽流通節目을 작성시켜 庶孽登用의 문을 넓히고,[25] 1779년 3월 辛亥 처음으로 內閣檢書官을 두어 서얼중에서 문예있는 자 네 명을 차출하였으며,[26] 그 해 6월 癸丑朔 朴齊家·柳得恭·李德懋·徐理修를 初代 檢書官에 임명하였다.[27] 이들 4인은 奎章閣의 雜職으로 5품관이었고, 7품이하의 관원은 그 품계에 따라서 軍職에 제수되었다.[28] 서얼출신이라 중요한 직위를 부여할 수 없었으나 正祖는 이들의 학덕을 존중하여 近密之職의 대우를 하고, 선용에 있어서도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였다.[29] 이와같이 엄격한 試藝를 거쳐 선발된 檢書官은 奎章閣 업무를 수행하는 執事官의 역할 및 서적의 필사·교정과 問答箚記에서 그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30] 깊고 풍부한 학문적 지식으로 인하여 正祖의 신임이 두터웠다. 初代 檢書官에 등용 되었던 四檢書官 중 李德懋·朴齊家·柳得恭 3인은 당시 北學派의 흐름을 잇는 계열로 북경을 왕래하고 淸朝文物의 수입을 역설한 학자였다.[31] 이무렵 淸朝는 康熙帝의 乾隆治世를 맞이하여 碩學鴻儒가 배출되었고 學問界에는 實事求是의 신기풍이 조성되었다.[32] 이러한 선진문화를 흡수하고자 正祖는 즉위초부터 자주 燕行使를 북경에 보내고 이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비상한 관심을 쏟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檢書官에 등용되었던 세

(21) 윗책 敎習第6 講製條
(22) 윗책
(23) 윗책 親臨條
(24) 윗책 賞罰條
(25) 《葵史》 권5 正祖元年 正月初二日 問旱求言條 및 兩銓節目條
(26) 《正宗實錄》 권2 正祖 3年 3月 辛亥條「初置內閣檢書官 以庶類中有文藝者差出 置四員」
(27) 《正宗實錄》 권3 正祖 3年 6月癸丑條〔李相佰, 〈庶孽禁錮始末〉註 (199)에서 再引用〕
(28) 《大典會通》 권1 京官職 從二品衙門 奎章閣條.
(29) 《正宗實錄》 권22 正祖 10年 8月 甲寅條「內閣啓言 檢書之任 職事則華要 直所則深嚴 凡所以擇人 閱試才藝者 宜簡而不宜濫 至若試藝之規 詩用十韻律 文用論一道 經則三經中自願 史則兩漢中自願 筆則本任需用 多在小楷 而兼試小中楷 恐合事宜 敎曰 依此定式」
(30) 李德懋, 《雅亭遺稿》 권3 檢書廳記;「……又置四檢書以佐之 凡御容奉審 節日起居 城外扈駕 燕射進箋 曬書之執事 與夫御製也日曆也日省錄也命令文字之自內閣出者 莫不有編摩繕寫考校之責焉 每文臣月講 上所親問及進講諸臣互相辨難者 輒從旁執筆箚記之 退署其卷末 藏之惟謹……」
(31) 千寬宇, 1979, 《近世朝鮮史硏究》 서울 一潮閣 p. 358
(32) 藤塚鄰, 1929, 《淸朝文化東傳의 硏究》 p. 8

학자도 淸朝의 新學風을 중개하고, 閣臣 및 招啓文臣을 도와 正祖朝 문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의 편찬 및 간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正祖는 明의 內閣에서 관장하던 御集纂修의 제도를 본받아 奎章閣臣에게 圖書編次의 일을 맡겼으며,[33] 도서는 소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摹印을 갖춘 연후에야 사방에 널리 혜택이 미치고 人知의 계발이 가능함을 천명하여[34] 奎章閣이 간행기능까지 포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正祖는 奎章閣의 閣臣, 招啓文臣, 檢書官을 주축으로 삼아 春邸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던 책은 물론 당시에 전해지는 많은 책들 중에서 選本 作業을 철저히 한 후 학자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주옥같은 서적을 편찬해 냈다. 한편으로는 校書館을 奎章閣의 外閣으로 삼고 수종의 활자를 주조하여 內閣의 주관하에 간행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적의 편찬·간행사업은 정조조 찬란히 꽃피웠던 문예진흥의 결과로 더욱더 서적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3. 도서관적 기능

奎章閣은 右文政治의 기틀을 다지고, 학술·문화적 사업을 궤도에 올리게 되면서 본래 목표했던 御製尊閣의 기능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王立圖書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도서의 수집·정리·보관·열람·참고·배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도서의 수집은 기존장서인 弘文館과 江華府行宮의 藏本 및 皇明賜書를 근간으로 하고[35] 納本과 購入에 의해 摛文院을 거쳐 이루어 졌다. 納本의 경우는 奎章閣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서에서 편찬·간행되는 官刊本, 善本을 골라 翻刻한 翻刻本, 外閣 및 各道에서 간행한 私刊本이 모두 摛文院에 직송되었다.[36] 購入의 경우는 京師·京外·燕市로 나누어서 하였다. 京師·京外에서 구입시 摛文院이 請買를 草記하였다. 재정은 京師의 경우 度支에서 拮据하고, 京外는 備局에서 紀要를 작성하였다. 燕市에서 사올 때는 摛文院이 草記하여 왕의 재가를 받고 奎章閣臣이 某庫某銀幾兩을 首譯에게 획급하며 包外와 入送의 뜻을 平安道臣에게 알린 다음 赴燕三使가 살펴 구입토록 하였다.[37]

도서정리에 있어서 분류는 四部分類法을 채용하였다. 모든 책은 甲(經)·乙(史)·丙(子), 丁(集)으로 나누고, 甲部는 9類, 乙部는 8類, 丙部는 15類, 丁部는 2類로 다시 세분하여 총 4部 34類로 분류·정리하였다.[38] 다만 奉謨堂에 소장한 것은 甲部를 璿譜, 乙部를 王世妃世譜, 丙部를 御製, 丁部를 御筆로 나누어 정리하였다.[39] 四部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四部

(33) 《奎章閣志》(再草本) 編次第 5
(34) 윗책 (完成本) 提學徐命膺撰字瑞記 ;「……敎曰 閣不可藏書而止 又當有摹印之具然後 可以嘉惠四方 啓發人知也」
(35) 《正宗實錄》 권11 5年 6月 庚子條
(36) 《奎章閣志》(完成本) 권1 書籍第 5 藏書條
(37) 《奎章閣志》(初草本) 下篇 書册 購書條
(38) 《奎章閣志》(完成本) 書籍第 5 藏書條
(39) 《奎章閣志》(初草本) 下篇 書册 藏書條

裝縹法에 따라 圖書簽의 色을 달리하였으니, 經部는 紅簽, 史部는 靑簽, 子部는 黃簽, 集部는 白簽이다.[40]

분류 정리되어 소장된 책들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奎章總目,[41] 西庫藏書錄,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등이[43] 正祖 당대에 엮어졌다.

도서의 보관을 위한 奎章閣의 시설은 宙合樓, 奉謨堂, 閱古觀, 皆有窩, 書香閣(移安閣) 및 西庫로 이루어 졌는데, 그중 宙合樓에 正祖의 御眞·御製·御筆·寶册·印章 등을 奉安하였고, 奉謨堂은 列聖御製·御筆·御畵·顧命·遺誥·密敎·璿譜·世譜·寶鑑·狀誌 등을 보관하였다. 閱古觀과 皆有窩에는 華本이, 西庫에는 東本이 각각 소장되었다. 書香閣은 移安閣이라 별칭되었듯이 御眞·御製·御筆 등의 포쇄와 함께 移安의 기능을 수행하였다.[43] 奎章閣은 內閣의 書庫外에 江都外閣을 1781년(正祖 5) 3월에 奎章外閣으로 삼아[44] 敎命·册寶·列朝御製御筆·古今書籍·圖畵 등을 보관하였다.[45]

도서를 열람할 때는 3가지의 象牙牌가 王命出納, 內府書籍命入, 內府書籍請出에 사용되었다.[46]

참고업무로는 校書와 考書가 있다. 校書는 도서이용에 만전을 기하려고 奎章閣의 所藏本, 新編書籍, 新印書籍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다.[47] 考書는 弘文館의 제도를 본받아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것이다.[48]

서적의 배포를 위해 頒賜의 제도를 두었다. 이 제도는 世宗 때부터 시작되었는데[49] 이때와서 법령화되었다.

《奎章閣志》 初草本을 보면

「서적의 編書나 印役後에는 摛文院에서 頒賜朝臣의 職姓名을 列書하여 왕의 재가를 거친다. 재가를 거치면 內賜記를 쓰고 同文之寶를 날인하여 內賜한다.」[50]

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書籍頒賜의 범위가 朝臣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朝臣이외에 弘文館이나 奎章閣 招啓文臣에게 內賜하였으며 弘文館·春秋館·藝文館·奎章閣 등 서

(40) 白麟, 1981, 《韓國圖書館史硏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p. 121
(41) 宋日基, 1982, 〈奎章總目考 —特히 徐命膺 徐浩修父子의 活動을 中心으로—〉 서울 中央大大學院
(42) 南權熙, 1983, 〈奎章閣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分析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大邱 慶北大學校大學院
(43) 《正宗實錄》 권2 正祖即位年 9月 癸巳條; 《奎章閣志》 (完成本) 建置 第一 內閣
(44) 《正宗實錄》 권11 正祖 5年 3月 癸未條
(45) 裵賢淑, 1979, 〈江都外奎章閣考〉 《圖書館學論集》 第 6 輯
(46) 《奎章閣志》 (完成本) 雜式
(47) 《奎章閣志》 (初草本) 書策 校書條
(48) 《弘文館志》 館規第四 故事付 博考; 《奎章閣志》 (初草本) 下篇 書策 考書條
(49) 《世宗實錄》 권90 世宗 22年 8月 乙卯條
(50) 《奎章閣志》 (初草本) 下篇 書策 頒書條

적을 필요로 하는 특수기관과 史庫, 成均館의 尊經閣, 校書館 등의 藏書處에 반사하였다.[51] 또 內賜印은 同文之寶를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再草本에서는 奎章之寶를 날인하도록 개정하였다.[52]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서 1781년(正祖 5) 刊本인 《親臨摛文院講義》와 《文臣講製節目》에는 同文之寶를 사용하고 있지만[53] 그후의 印本에서는 同文之寶의 사용 예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寶章은 별로 쓰이지 않은 채 곧바로 奎章之寶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二. 도서의 편찬 및 간행

위의 학술·문화적 기능중에서 도서의 편찬 및 간행을 부각시켜 볼 때에 도서의 편찬은 규장각이 주관했지만 간행에 있어서는 종래의 印書機關을 흡수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두 기능을 독립시키고 각각 그 규정 및 경위를 考究하여 편찬·간행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도서의 편찬

正祖는 明의 內閣이 관장하던 御集纂修의 제도를 본받아 奎章閣의 編書之法을 규정하고 이에따라 도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編書之法은 御製之法과 諸書之法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54] 御製之法은 왕의 製述을 編次하는 규정이고 諸書之法은 왕의 特敎나 신하의 箚請에 의해 이루어지는 御定書와 一般書에 관한 규정이다.[55] 이 규정을 참고하여 御製와 御定 및 一般書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御 製

ㄱ. 御製編次規定

正祖는 즉위하면서부터 英祖가 御製編次人을 두고 御製를 編次한데 관심을 두고 이를 제도화시키려 하였다. 英祖朝에는 御製編次人을 두고 編次의 일을 맡겼으나 정식으로 임명한 직책이 없었다. 正祖는 우선 즉위년 9월 癸巳에 "先祖(英祖)編次人인 具允明 蔡濟恭 등으로 하여금 局을 열어 英考御製를 編次 간행하게 하고 御墨은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또 御製가 중외에 산재되어 간행되지 못한 것은 등사하여 英祖의 능 옆 便方에 一本을 두고 一本은 大內別殿에 奉安하라."고[56] 명하여 英祖의 御製는 先祖編次人들로 하여금 끝을 맺도록 하

(51) 白麟, 1969. 8,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對하여〉《國會圖書館報》 5권 8호 p. 17
(52) 《奎章閣志》(再草本) 編次第五 頒賜條
(53) 註(51)과 같음
(54) 《奎章閣志》(初草本) 下篇 書策 編書條
(55) 윗책, 《奎章閣志》(完成本) 編次第四 會粹 繕寫條, 書籍第5 編書 進書條
(56) 《正宗實錄》 권2 正祖即位年 9月 癸巳 「建奎章閣于昌德宮禁苑之北(中略)……上 即阼 首命先朝編

였다. 이 일이 마무리되자, 1781년 3월 丁酉에 奎章閣은 곧 御製編次之規를 품지하였으며 正祖는 이에 대해 英祖의 編摩之例를 참조하라는 비답을 내리고 있다.(57) 이러한 正祖의 비답이 있은 후 御製編次之規는《奎章閣志》初草·再草本에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얻었으며, 1784년(正祖 8)의《奎章閣志》完成本 編次 第4 會粹·繕寫條로 완비되었다.(58)

이 두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御製를 會粹하는 것이다. 內閣은 御製를 詩, 手書, 諭書, 封書, 論, 序引, 題跋, 記, 碑銘, 行狀, 行錄, 祭文, 雜著, 策問, 綸音, 傳敎, 備忘記, 批答, 判付, 經史講義, 日省錄, 日得錄 등 22目의 體別로 나누어 정리한다. 綸綍에 실린 傳敎, 備忘記, 判付, 批答 등은 綸音이 내리는 당일에 編錄한다. 다만 착오가 드러나거나 체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정정할 때는 고칠 부분만 발췌해서 바로 잡는다. 治體에 관한 것은 중요부분을 謄書해 두었다가 왕의 재가를 거치고 교정을 한 뒤에 이를 類別로 御製에 編錄한다.(59) 經史講義條問은 招啓文臣이 編次를 맡는데 原本대로(60) 謄書하며 謄書後 여러번 講讀하여 중첩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61) 日省錄은 孔門의 弟子인 曾子의 "一日三省之義"에서 그 뜻을 취한 것으로 編次동기는 正祖가 春邸시부터 일기를 썼던 데서 비롯된다. 正祖는 등극후 점점 機務가 번거롭게 되자 1783년부터 奎章閣 直提學 鄭志儉, 原任直閣 徐鼎修 등에게 명하여 閣臣이 직접 草案을 하고 啓를 올려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入直閣臣이 朝報 政目 傳敎 批答을 보고 사실을 抄出한다. 抄出後 5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써서 왕에게 올리고 왕의 필삭한 원본이 내려오면 御製에 編錄한다.(62) 日得錄은 正祖 7년(1783, 癸卯) 8월 乙亥 直提學 鄭志儉 등의 上劄로 이루어 진다.(63) 奎章閣의 閣職은 春秋를 例兼하므로 正史이외에 義理, 經史, 治法, 政謨 등에 대해서도 專心諦聽하였다가 退筵後에 기록해 둔다. 歲終에 각자 기록한 것을 내어 서로 證正하고 貞觀政要, 朱子語類의 例를 모방해서 編次한다.(64)

둘째, 御製繕寫에 관한 것이다. 御製書를 繕寫할 때는 潔精紙를 사용하여 奎章閣의 寫字官이 繕寫한다. 각 卷은 上·下編으로 나누고 下編은 空紙로 남겨두어 續謄에 대비한다. 繕寫가 끝나면 入直閣

次人具允明蔡濟恭等 開局編英考御製 鋟于梓 摸英考御墨 刻于石 又以御製之散在中外 未及鋟梓者 設局謄寫一本 奉藏于元陵之便房 一本權安于大內別殿……」.

(57)《正宗實錄》권11 正祖 5年 3月 丁酉條「奎章閣 以編次御製之規 稟旨 敎曰(中略)……傳敎批答之移編御製冊及各體文字之謄上御製冊也 潤色斤正等事 如古之編次人編摩之例 然後可也……」.

(58)《奎章閣志》(初草本) 下篇 書策 編書條 ; 같은책 (再草本) 編次第五 校正 會粹 分類 系年錄 語錄 繕寫; 같은책 (完成本) 編次第四 會粹 繕寫條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는《奎章閣志》는 세차례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現存本을 보면 初草, 再草本은 筆寫이고 完成本은 活字本이다. 이중 初草, 再草本은 서울大 소장으로 初草 再草가 바뀌어 있다. 즉 (貴 734)의 再草本이 初草本이고 (貴 1400)의 初草本이 再草本이므로 이를 정정해서 인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李離和, 1979. 〈奎章閣小考〉《奎章閣》3, p154, 鄭玉子, 1981, 〈奎章閣抄啓文臣硏究〉《奎章閣》4 p. 4-5, 宋日基, 1982, 〈奎章總目考—特히 徐命膺 徐浩修父子의 活動을 中心으로〉 서울 中央大大學院 p. 24-26에서도 정정해서 인용되고 있다. 完成本은 正祖 8년(1784)에 丁酉字로 印出된 活字本을 의미한다.

(59)《奎章閣志》(完成本) 編次 第四 會粹

(60) 李德懋著,《雅亭遺稿》권3 檢書廳記 ;「여기서 원본이라 함은 檢書官이 招啓文臣月講에 上이 親問한 것과 進講하는 文臣들이 辨難한 것을 일차로 기록해 두고 月講이 끝나면 책끝에 기록자의 署名을 하여 보관해 둔 것을 말한다.」

(61)《奎章閣志》(完成本) 編次第四 會粹條

(62) 윗책 日省錄

(63)《正宗實錄》卷16 正祖 7年 8月 乙亥條;《奎章閣志》(完成本) 編次第四 會粹 日得錄

(64)《奎章閣志》(完成本) 編次第四 會粹 日得錄

臣과 檢書官이 原本과 謄本을 考準후에 入啓해서 왕의 재가를 거친다. 왕의 재가를 거친 것은 摛文院과 奎章閣 및 大闕內에 각각 一部씩 保管한다. 續謄이 필요한 경우 摛文院本은 御製가 내려오는 즉시 續謄한다. 內府本은 한달에 두번 續謄與否를 왕에게 啓稟하고 御製本을 繕寫하여 入啓한다. 奎章閣本은 四孟朔에 奉審日을 정한 다음 기일전에 啓稟한다. 당일이 되면, 御製本을 續謄하고 奉審을 啓稟한 후 원자리에 환원시켜 奉藏한다.」(65)

라고 한 바와 같이, 正祖의 御製는 奎章閣의 閣臣이 類別로 나누어 편차하였다. 이중 經史講義만은 招啓文臣月講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招啓文臣이 編次하였다. 御製를 繕寫할 때는 寫字官이 하고 續謄에 대비하여 上·下編으로 나누어 下編은 空紙로 남겨두었다. 檢書官이 閣臣을 도와 考準을 한 후에 왕의 재가를 거쳐 續謄이 완료된 것은 摛文院, 奎章閣, 大內에 각 一部씩 보관하였다.

ㄴ. 編次經緯

奎章閣은 正祖의 御製를 御製會粹·繕寫法에 따라 22目의 類形別로 정리해 두었다가 2차에 걸쳐 체계적인 편찬을 시도하였다. 일차는 正祖末年에 이루어지는데 1799년 12월 甲辰條를 보면 正祖 春邸時부터 1799년까지의 御製를 4集 30目 191編(실제 190編)으로 완성하였다. 이들 御製繕寫本은 奎章閣 설립 후 徐浩修가 실제 그 일을 주관하여 義例를 세우고 나누어 編次하였다. 1798년 가을에 왕명을 받고 李晩修, 金祖淳, 李存秀 등과 함께 수십 편을 교정하였으나 완성을 못한 채 徐浩修가 그해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다시 徐榮輔로 하여금 續編校寫케 하고, 鄭大容, 沈象奎, 金近淳 등에게 分校를 명하여 2本을 완성하니 1本은 大內에, 1本은 摛文院에 소장하였다.(66) 2차는 1801년(純祖 1) 12월 癸丑에 이루어졌다. 奎章閣이 1799년 御製繕寫本에 正祖가 승하하기 전 까지의 御製를 補編하고 전체적으로 再編次하여 184編 100册으로 엮어졌다.(67) 그러나 여러 책의 해제서인 群書標記만은 수록한 책들의 탈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 제목만을 열거해 놓고 완성되는 대로 실어 合刊할 방침을 세웠다.(68) 그후 1814년 3월 癸丑 整理字本으로 印出되는데 정식 書名은 「正宗大王御製弘齋全書」이다. 모두 30건을 印出하여 奉謨堂, 宙合樓, 望廟樓, 華寧殿, 文獻閣, 五處史庫外에 奎章閣, 內閣, 玉堂, 春坊에 각 1건씩 奉藏하였다.(69) 이들 編次本들은 처음에 설정된 御製會粹法의 22目과 비교해 보면 항목상에 가감이 있는 데 상호 관련시켜 차이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항목의 비교를 위해 御製會粹規定을 A, 正祖23年 御製繕寫本을 B, 純祖元年 御製編次本을 C, 純祖14年 整理字本을 D의 부호로 설정한다.

A의 항목은 詩, 手書, 諭書, 封書, 論, 序引, 題跋, 記, 碑銘, 行狀, 行錄, 祭文, 雜著,

(65) 《奎章閣志》 編次 第4 繕寫條
(66) 《正宗實錄》 권52 正祖 23年 12月 甲辰條
(67) 《純祖實錄》 권3 純祖 元年 12月 癸丑條
(68) 윗책 권6 純祖 4年 12月 辛酉條
(69) 윗책 권17 純祖 14年 3月 癸丑條

策問, 綸音, 傳敎, 備忘記, 批答, 判付, 經史講義, 日省錄, 日得錄의 22目이다.

B의 항목은 詩 5편, 書 1편, 序引 4편, 記 3편, 碑 3편, 誌 1편, 行錄 1편, 行狀 1편, 祭文 8편, 綸音 4편, 敎 7편, 敦諭 3편, 諭書 3편, 封書 3편, 批 5편, 判 3편, 策問 5편, 說 1편, 論 1편, 贊 2편, 箴 1편, 銘 4편, 頌 1편, 雜著 7편, 講義 56편, 類義評例 2편, 故寔 6편, 審理錄 25편, 日得錄 19편, 群書標記 5편의 30目 191편이다.

C의 항목은 春邸錄 4편(詩 2편, 書 1편, 序引, 記, 祭文, 論, 贊, 箴, 銘, 頌, 雜著, 跋을 통합하여 1편), 詩 3편, 序引 6편, 記 1편, 碑 1편, 誌 1편, 行錄 1편, 行狀 1편, 祭文 7편, 綸音 4편, 敎 7편, 敦諭 1편, 諭書 1편, 封書 3편, 批 5편, 判 1편, 策問 5편, 說 贊 銘 合 1편, 雜著 10편, 講義 56편, 鄒書春記 2편, 魯論夏箋 4편, 曾傳秋錄 1편, 類義評例 2편, 故寔 6편, 審理錄 26편, 日得錄 18편, 群書標記 6편의 28目 184編 100册이다.

D의 항목은 C의 項目과 같다.

A와 B를 볼 때 A의 22目 중 題跋, 備忘記. 日省錄을 제외하고 B에 모두 포괄되었다. B에는 A의 19항목외에 11항목이 추가되었는데, 誌, 敦諭, 說, 贊, 箴, 銘, 頌, 類義評例, 故寔, 審理錄, 群書標記이다. 용어의 변화가 온 것은 手書→書, 碑銘→碑, 傳敎→敎, 批答→批, 判付→判, 經史講義→講義 등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B와 C를 볼 때 30目이 28目으로 감소되었다. B의 書, 論, 箴, 頌의 네 항목이 줄고 說, 贊, 銘은 한 항목으로 통합되었으며, C는 春邸錄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안에서 다시 세분하였다. 그외에 鄒書春記(孟子硏究), 魯論夏箋(論語硏究), 曾傳秋錄(中庸硏究)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C와 D는 항목상의 변동이 없으나, 群書標記의 내용이 보충되었다.

이와 같이 御製 항목들이 변화되는 것은 도서의 刪削 增加에 따른 것이다. A의 日省錄만은 1760년(英祖 36)부터 시작하여 1910년(隆熙 4)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弘齋全書에 편입시킬 수 없었던 것같다.

弘齋全書에 편입되거나 혹은 편입되지 않았더라도 單行本으로 편찬된 御製書는 〈欽恤典則〉(1권), 〈詩樂和聲〉(10권), 〈論語講義〉(8권), 〈大學講義〉(3권), 〈孟子講義〉(4권), 〈尙書講義〉(8권), 〈資治通鑑綱目講義〉(10권), 〈左傳講義〉(1권), 〈周易講義〉(5권), 〈詩經講義〉(9권), 〈中庸講義〉(6권), 〈日得錄〉(18권), 〈審理錄〉(26권), 〈綸綍〉(237권), 〈日省錄〉(675권)이다.

〈欽恤典則〉(1권)은 正祖가 臨御之初에 中外에 綸音을 내려 刑具를 釐正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저술을 하였다. 편집은 有司가 명을 받아 刑具之式, 棍制之式, 刑具之圖, 棍制之圖, 笞杖, 訊杖, 枷, 杻, 鐵索, 囚禁, 棍의 11目으로 편성한 것이다.[70] 〈詩樂和聲〉(4권)은 國初 이후 어지러워진 俗樂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正祖가 직접 律呂와 造化의 근원을 상고하고, 諸家의 설을 참고하여 완성한 音樂의 正統書이다. 閣臣 徐命膺이 왕명을 받

(70) 《群書標記》(影印本) 서울 學文閣 1970, pp. 34-36

들어 樂制源流, 樂律本元, 樂懸法象, 樂器度數, 樂經合旋, 樂經均調, 樂歌擬譜, 樂奏擬譜, 樂舞擬譜, 度量衡譜의 10目으로 편집하였다.[71] 招啓文臣을 교육하기 위해 엮어진 講義條問은 經史講義라는 항목으로 弘齋全書에 편입되었으나 단행본으로 엮어진 것이 9種이나 된다. 이를 살펴보면, 〈論語講義〉(5권)는 正祖 5년(1781) 1권, 正祖 7년 2권과 正祖 8년에 1권을 選定하여 正祖 9년에 招啓文臣 徐瀅修가 編次하였고 正祖 10년과 正祖 11년에 각 1권을 選定하여 正祖 15년에 招啓文臣 徐有榘가 편찬하였다.[72] 〈大學講義〉(3권)는 正祖 5년에 1권과 正祖 7·8년에 1권을 選定하여 招啓文臣 徐瀅修가 編次하였고 正祖 10·11년에 1권을 뽑아 正祖 15년에 招啓文臣 徐有榘가 편찬하였다.[73] 〈孟子講義〉(4권)는 正祖 5년에 2권, 正祖 7년에 1권을 選定하여 正祖 9년에 招啓文臣 徐瀅修가 編次하였고 正祖 10·11년에 1권을 선정하여 徐有榘가 편집하였다.[74] 〈尙書講義〉(8권)는 正祖 5년과 正祖 7년에 각 2권을 選定하여 正祖 9년에 招啓文臣 徐瀅修가 編次하였고, 正祖 8년에 4권을 選定하여 正祖 15년에 招啓文臣 徐有榘가 編次하였다.[75] 〈資治通鑑綱目講義〉(10권)는 朱熹의 〈資治通鑑綱目〉 중에서 695개의 條問을 만들고 이를 抄啓文臣 沈晋賢이 編次한 것이다.[76] 〈左傳講義〉(1권)는 正祖 8년에 左傳講義條問 중의 일부를 選定하여 正祖 15년에 招啓文臣 徐有榘가 編次한 것이다. 杜預의 註釋을 중점으로 하고 諸家說을 참작하였으며 書法은 經에 의거하여 傳을 보고, 事實은 傳에 따라 經을 보도록 하였다.[77] 〈周易講義〉(5권)는 正祖 7년에 4권을 選定하여 正祖 9년에 閣臣 金喜가 編次하였으며, 正祖 8년에 選定한 1권은 正祖 15년에 招啓文臣 徐有榘가 편찬하였다. 正祖는 條問 屢百餘條를 모두 程傳의 義理를 따라 그 說明을 미루어 가는 사이에 朱子本義의 象數로서 參互하도록 하였다. 周易의 正脈은 程傳의 義理와 朱子本義의 象數를 미루어 孔門의 翼을 추구하고 孔門의 翼을 통해 文王의 卦辭와 周公의 爻辭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78] 〈詩經講義〉(9권)는 正祖 5년에 2권과 正祖 7년에 1권을 選定하여 正祖 9년에 招啓文臣 洪仁浩가 條問을 編次하였고 正祖 8년에 1권을 選定하여 正祖 15년에 招啓文臣 徐有榘가 編次하였으며 正祖 13년과 正祖 14년에 다시 5권을 選定하여 正祖 16년에 招啓文臣 金熙朝 등이 完成하였다.[79] 〈中庸講義〉(6권)는 正祖 5년에 1권, 正祖 7년에 1권과 正祖 8년에 2권을 選定하여 正祖 9년에 抄啓文臣 徐瀅修가 編次하였고, 正祖 18년에 2권을 택해서 正祖 22년에 抄啓文臣 李魯春이 편차한 것이

(71) 《群書標記》(影印本) pp. 36-39
(72) 윗책 pp. 76-77
(73) 윗책 pp. 75-76
(74) 윗책 pp. 77-78
(75) 윗책 pp. 74-75
(76) 윗책 pp. 81-82
(77) 윗책 pp. 78-79
(78) 윗책 pp. 69-74
(79) 윗책 pp. 85-86

다.[80] 〈日得錄〉(18권)은 正祖 7년부터 규장각에서 편집하여 政事, 人物, 文學, 評論 등을 포함한 것이며, 弘齋全書에도 편입된 서적이다.[81] 〈審理錄〉(26권)은 招啓文臣 洪仁浩·金熙朝 등이 正祖 재위 25년간의 刑獄의 決案을 편집한 것이다.[82] 〈綸綍〉(237권)은 正祖의 絲綸을 閣臣 등이 각 체별로 모아 엮은 것이다.[83] 〈日省錄〉(675권)은 正祖 7년부터 각신이 정조를 대신하여 기록한 것으로 正祖가 王世子로 있던 英祖 36년(1760)부터 隆熙 4년(1910)까지의 국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편년체의 기술로 조선후기 실록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료이다.[84]

(2) 御定書 및 一般書

ㄱ. 編書規定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奎章閣志》 初草本에서 규정한 諸書는 왕의 特敎나 신하들의 筍請에 의해 內閣에서 편찬한 御定書와 一般書이다. 이에 대해서는 《奎章閣志》 完成本 書籍 第5 編書에 그 규정이 나타나 있다.

그 규정을 보면

「卷帙이 많은 책은 時原任閣臣이 類別로 나누어 찬집하고 鈔節 校讎는 抄啓文臣이 조역을 하며 一篇이 완성될 때마다 찬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登對하여 왕의 재가를 받는다. 卷帙이 적을 때는 時原任閣臣의 명단을 列書하여 왕에게 올리며 왕이 선정한 편집인들이 편찬을 주관한다. 刊正이 필요한 경우는 入直閣臣이 檢書官과 더불어 교감을 하며 잘못된 부분은 朱墨으로 刊正을 한다.」[85]

라고 하였다.

위의 규정과 같이 御定書와 一般書는 卷帙의 다소에 따라 편찬진이 다르다. 많을 때는 時原任閣臣이 모두 참여하며, 鈔節 校讎는 抄啓文臣이 맡는다. 적을 때는 閣臣中에서 왕이 선정한 편집인이 맡고 校訂은 檢書官이 閣臣을 도와서 한다.

ㄴ. 編書經緯

御定書 및 一般書는 각각 그 편성된 연대순으로 경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御定書는 왕이 선정해서 신하에게 편차시킨 것과 왕이 직접 편집하여 臣下에게 교수를 일임한 것이 있는데, 전자는 御選이라는 용어를 후자는 御編의 용어를 원용해 쓰기로 한다.[86]

御選은 〈瓊屑糕〉(1권), 〈詩觀〉(560권), 〈史記英選〉(6권), 〈杜律分韻〉(5권), 〈陸律分韻〉(39권), 〈大學類義〉(20권)로 6종이며, 御編은 〈列朝羹墻錄〉(8권), 〈文苑黼黻〉(12권), 〈鄕禮

(80) 《群書標記》(影印本) pp. 146-147
(81) 윗책 pp. 227-231
(82) 윗책 pp. 221-224
(83) 윗책 pp. 231-232
(84) 윗책 pp. 225-227
(85) 《奎章閣志》(完成本) 書籍 第 5 編書
(86) 諸橋轍次, 1968, 《大漢和辭典》 권 4 東京 大修館書店 p. 896

合編〉(3권), 〈周公書〉(9권), 〈朱子書節約〉(20권)으로 5종이다.

〈瓊屑糕〉(1권)는 正祖 5년에 瓊山의 〈大學衍義補〉중에서 精英만을 뽑아 13目으로 편집한 것이며 內閣待敎 徐龍輔가 對校하여 완성을 본 것이다.[87] 〈詩觀〉은 총 560권에 77,218首의 詩를 수록하고 있다. 正祖는 즉위초부터 中國古代詩集인 詩經부터 明까지 그 시대에 본보기가 될만한 詩만을 선정하여 正祖 16년에 內閣으로 편집하게 한 것이다.[88] 〈史記英選〉(6권)은 司馬遷의 史記 중에서 本紀 1편과 世家 2편 및 列傳 22편을 선정하고 正祖 19년(1795)에 閣臣·抄啓文臣 등에게 돌려가며 교정을 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正祖의 由博返約之意에서 비롯된 것이다.[89] 〈杜律分韻〉(5권)과 〈陸律分韻〉(39권)은 正祖 22년에 杜少陵의 五言詩 626首, 七言詩 151首를 韻으로 分類하여 5권, 放翁의 五言詩 1,986首 七言詩 2,891首를 역시 韻으로 분류하여 39권으로 엮어서 閣臣 李晩秀, 沈象奎 등이 교정하여 완성한 것이다.[90] 〈大學類義〉(20권)는 眞德秀의 〈大學衍義〉와 丘濬의 〈大學衍義補〉를 취하여 그중에 가장 切要한 것을 간추린 것이다. 正祖는 春邸부터 이책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즉위후 5년까지 手批를 하였다. 正祖 23년에 新舊選 招啓文臣이 分編謄批하고 湖南經義功令生이 校閱한 것을 招啓文臣 徐瀅修와 尹光顔이 再校하여 편성한 것이다.[91] 〈列朝羹墻錄(8권)은 正祖가 손수 〈列聖御製〉〈列聖誌狀〉〈國朝寶鑑〉〈龍飛御天歌〉〈經國大典〉〈五禮儀〉〈文獻備考〉 등의 책에서 列聖朝의 治法과 政謨에 관한 聖訓을 모아 엮은 것이다. 正祖 9년에 大臣 李福源을 總裁로 하고 館閣諸臣이 分編纂修하여 20目으로 편찬한 것이다.[92] 〈文苑黼黻〉(12권)은 正祖가 國初이래에 館閣文字를 모아 春邸時 편집한 것이다. 御極이후 각 체별로 다시 增益하고 內閣待敎 李昆秀가 校正을 맡아서 正祖 11년(1787)에 완성을 본 것이다.[93] 〈鄕禮合編〉(3권)은 正祖 21년에 왕이 직접 歷代 鄕飮之儀를 모아 會通한 것이다. 卷 1 은 鄕飮酒禮를, 卷 2 는 鄕射禮와 鄕樂을, 卷 3 은 士冠禮, 士昏禮 등을 부록으로 실었으며 閣臣과 掌禮之臣이 參伍看詳하여 이루어진 것이다.[94] 〈周公書〉(9권)는 正祖가 周公의 著書가 전해지지 않는데 착안하여 〈汲冢〉〈爾雅〉〈家語〉〈呂覽〉〈說苑〉〈史記〉〈尙書〉〈大傳〉〈韓非子〉〈淮南子〉〈荀子〉〈鬻子〉 등의 책에서 周公의 言行에 관한 것을 뽑아 閣臣 李晩秀, 沈象奎, 招啓文臣 徐瀅修, 洪奭周 등에게 分編 校正하게 하여 正祖 24년에 완성한 것이다.[95] 〈朱子書節約〉(20권)은 正祖가 英祖 50년부터 朱子書를 읽기 시작하여 글 가운데 正學에 도움이 될만한

(87) 《群書標記》(影印本) pp. 43-44
(88) 윗책 pp. 86-104
(89) 윗책 pp. 123-125
(90) 윗책 pp. 163-165
(91) 윗책 pp. 180-185
(92) 윗책 pp. 286-287
(93) 윗책 pp. 61-68
(94) 윗책 pp. 342-345
(95) 윗책 pp. 209-215

것을 선정한 것이다. 正祖 21년에 이를 재편집하여 湖南經工生 등에게 輪校하게하고 正祖 22년에 閣臣 徐有榘에게 訂正을 일임하여 正祖 24년에 완성한 것이다.[96]

御定書이외에 內閣에서 편찬된 일반서적들은 총 40종인데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正祖 즉위년에 〈宮園儀〉(4권)가 편찬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책은 閣臣 李福源과 禮曹參議 柳義養이 宮·園의 儀文과 儀物을 모아 圖說儀註 事實의 차례로 엮은 것이다.[97] 正祖 3년에 〈奎章韻瑞〉(8권)가 엮어졌다. 이 책은 閣臣 徐命膺이 宋 蘇軾의 〈禮部韻略〉 이하 數家의 韻書를 토대로 聲譜, 音韻, 樂韻, 古韻의 4目으로 정리한 것이다.[98] 正祖 4년에는 〈名臣奏議要略〉(16권)과 〈奏議纂要〉(8권)가 편성되었다. 전자는 正祖의 명을 받아 奎章閣 閣臣들이 宋朝 3人(明道, 伊川, 晦菴)과 本朝 9人(趙光祖, 李滉, 成渾, 李珥, 趙憲, 金長生, 金集, 宋浚吉, 宋時烈)을 선정하여 편찬한 것이고,[99] 후자는 提學 金鍾秀가 편찬한 〈奏議要略〉이 東賢奏議에 미치지 못하자 正祖의 명에 의해 續纂된 것이며, 中國을 10권, 本朝를 6권으로 편집한 것이다.[100] 正祖 5년에 〈奎章總目〉(4권), 正祖 6년에 〈國朝寶鑑〉(68권), 〈別編〉(7권), 正祖 8년에 〈奎章閣志〉(2권), 正祖 13년에 〈金忠壯遺事〉(5권), 正祖 14년에 〈武藝圖譜通志〉(5권), 〈總譜〉(1권)가 각각 편찬되었다. 〈奎章總目〉(4권)은 皆有窩에 있던 華本을 기록한 4권의 目錄으로 閣臣 徐浩修가 撰人姓名 및 所著義例를 표시하고 혹은 序·跋 등을 節取하여 기록하고 있다.[101] 〈國朝寶鑑〉은 조선 역대 왕조실록중에서 謨訓 및 功烈이 큰 것과 後王의 鑑法이 될만한 것을 뽑아서 당대 정치의 귀감을 삼고자 작성된 것으로 사료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正祖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세가지의 寶鑑이 있었다. 世祖朝에 太祖, 太宗, 世宗, 文宗의 4代寶鑑을 만들어 國朝寶鑑이라 하였으며, 肅宗 때 宣廟寶鑑이 이루어지고, 英祖 때 肅廟寶鑑이 완성되었다. 이외에 定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 中宗, 仁宗, 明宗, 仁祖, 孝宗, 顯宗, 景宗의 12代는 寶鑑이 없었는데 正祖朝에 와서 이들 12朝 寶鑑과 英廟寶鑑까지 13朝寶鑑을 편찬하고 이에 전에있던 세 寶鑑을 합하여 68권을 작성하였으며 仁祖朝 이후는 尊攘之義에 관한 것을 따로 뽑아 〈別編〉(7권)을 편찬하였다.[102] 〈奎章閣志〉(2권)는 奎章閣이 宋·明의 舊制와 國朝의 舊典을 참작하여 奎章閣의 諸般제도를 建置, 職官, 奉安, 編次, 書籍, 敎習, 院規, 事實의 8目으로 편성한 것이다.[103] 〈金忠壯遺事〉(5권)는 忠勇將軍 金德齡의 詩文과 事蹟을 合編하고 그의 兄 德弘과 德普의 事蹟을 부록으로 붙여서 內閣이 分編勘校한 것이다.[104] 〈武藝圖譜通志〉(5권)는 內閣檢書官 李德懋와 壯勇營將官 白

(96) 《群書標記》(影印本) pp. 217-220
(97) 윗책 pp. 252-253
(98) 윗책 pp. 256-258
(99) 윗책 pp. 261-264
(100) 윗책 pp. 260-261
(101) 윗책 pp. 264-266
(102) 윗책 pp. 267-276
(103) 윗책 pp. 51-54
(104) 윗책 pp. 307-311

東脩 등이 宣祖朝 編刊本인 〈武藝諸譜〉와 英祖朝 編刊本인 〈武藝新譜〉를 증수하고 그외의 여러책을 상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總譜〉(1권)는 별도로 작성했는데 간략한 요지만을 추려 諺解를 달았으며 檢書官 朴齊家가 繕寫하여 편집한 것이다.[105] 正祖 15년에는 〈瓊林聞喜錄〉(3권), 〈訥齋集〉(6권), 〈林忠愍實紀〉(5권), 〈莊陵配食錄〉(2권), 〈秋官志〉(10권)의 5종이 편찬되었다. 〈瓊林聞喜錄〉(3권)은 正祖 15년에 成均館儒生 및 諸蔭官에게 試驗을 보이고 內閣에서 初試 三中以上과 更試 三下以上의 諸作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106] 〈訥齋集〉(6권)은 弘文館大提學 梁誠之의 詩文이다. 正祖는 그의 文集이 산일되어 있는 것을 알고 閣臣 徐榮輔에게 公私載籍의 斷簡殘篇을 모아 편찬을 맡긴 것이다. 本集 5권 외에 6권에는 世祖의 賜詩 및 후인의 讚述을 실어 부록으로 엮고 있다.[107] 〈林忠愍實紀〉(5권)는 閣臣 尹行恁이 正祖의 명에 의해 林慶業 장군의 遺文과 年譜 및 후인이 찬술한 문장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108] 〈莊陵配食錄〉(2권)은 內閣과 弘文館에서 端宗朝에 충성을 다했던 32인을 상고하여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224인은 별단을 만들어 함께 제사를 올리므로써 이들에 대한 인명록으로 엮어진 것이다.[109] 〈秋官志〉(10권)의 편찬을 보면, 內閣은 먼저 正祖 등극 이후의 中外 審理에 관한 批判을 모았다. 다음은 秋曹에서 편집했던 책의 체제를 淘削하고 金吾議獻은 별도로 유별하여 附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正祖 6년에 修潤을 하고 正祖 15년에 重補 편찬한 것이다.[110] 正祖 16년에 〈嶠南賓興錄〉(2권)과 17년에 〈關東賓興錄〉(5권)이 편찬되었다. 전자의 편성을 보면, 先正 李滉을 모신 陶山書院과 先正 李彦迪을 모신 玉山書院에 閣臣 李晩秀를 보내 致祭하고 致祭時 參班儒生들을 시험하여 試券中 優等 4인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들 작품과 전교 및 치제문을 모아 〈瓊林聞喜錄〉의 凡例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다.[111] 후자의 편찬경위를 보면, 正祖 16년에 關東道臣에게 명하여 經工과 功令에 밝은자를 추천케 하였다. 正祖 17년에 추천된 이들을 詩, 賦, 策, 詩義의 4題로 試驗하여 功令生 4인, 經工生 3인을 합격시켰다. 內閣에서 傳敎, 奏啓, 榜眼, 魁券으로 차례를 하고 經義와 條對는 조문 아래 붙여서 편집한 것이다.[112] 正祖 18년에는 〈奎章全韻〉(2권) 〈城制圖說〉(3권) 〈耽羅賓興錄〉(1권)의 3종의 도서가 편찬되었다. 〈奎章全韻〉(2권)은 招啓文臣 李書九와 檢書官 李德懋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우리나라 韻書 가운데 가장 정확한 책이다. 전체를 平, 上, 去, 入의 四聲으로 나누고 유에 따라 音을 맞추었다. 또한 여러가지 韻으로서 글자는 같으나 音義가 다른 것과, 華音東音이 글자에 따라

(105) 《群書標記》(影印本) pp. 64-68
(106) 윗책 pp. 319-320
(107) 윗책 pp. 314-317
(108) 윗책 pp. 317-319
(109) 윗책 pp. 82-85
(110) 윗책 pp. 313-314
(111) 윗책 pp. 320-321
(112) 윗책 pp. 322-323

音이 다른 것은 모두 표로 식별하여 참고하는데 편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113] 〈城制圖說〉(3권)은 閣臣 徐榮輔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軍制書이다. 杜佑의 通典 및 唐順의 武編에 실린 바 城制, 諸論著, 圖를 모으고 中國의 각 省府, 城制 및 我國八道의 營府와 城制를 뒤에 붙여 권 1은 城制論 및 城制圖, 권 2는 中國城制, 권 3은 東國城制로 편찬하였다.[114] 〈耽羅賓興錄〉(1권)의 편찬경위를 보면, 正祖는 17년에 濟州御史 沈樂洙를 보내서 백성의 衆瘼을 묻는 한편, 人才를 탐방하여 論, 策, 詩, 賦, 銘, 頌의 6體를 시험하였다. 內閣이 각 체별로 당선된 文武榜目, 試券, 魁作, 絲綸, 奏啓 등을 모아 책으로 편집한 것이다.[115] 正祖 19년에는 5종의 책이 편집되었다. 첫째, 〈咸興本宮儀式〉(2권)과 〈永興本宮儀式〉(2권)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咸興本宮은 穆祖 翼祖 度祖 桓祖 太祖의 位版을 모신 곳이요, 永興本宮은 太祖의 位版을 모신 곳인데, 이들 兩宮의 儀式節次가 어그러진 곳이 많아 閣臣 徐浩修와 徐榮輔 등이 古今의 것을 참고하여 13目으로 재편성한 것이다.[116] 둘째, 〈整理儀軌通編〉(10권)의 편찬이다. 이책은 正祖가 水原 顯隆園에 행차하였을 때의 儀節을 모아 儀軌堂上 李晩秀와 整理堂上 尹行恁이 편집한 것으로 每卷마다 正祖의 隱括을 거쳐 완성되었다.[117] 세째, 〈李忠武全書〉(14권)는 閣臣 尹行恁이 〈林忠愍實紀〉에 이어 忠武公의 모든 기록을 會通하여 편찬하였다.[118] 네째, 〈豊沛賓興錄〉(2권)이 엮어졌다. 正祖 19년에 桓祖의 8회 회갑을 맞아 祭享과 아울러 文武科를 실시하여 80인을 선정하고 優等 2인에게 급제를 내렸다. 內閣이 榜眼, 試券, 魁作, 躋享事實과 志慶聯詩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119] 正祖 20년에는 〈賡載軸〉(48권) 〈鏤板考〉(7권) 〈春秋左氏傳〉(28권)이 편찬되었다. 〈賡載軸〉(48권)은 正祖 臨御 이후 燕射, 試藝, 賞花, 釣魚, 稱慶 또는 紆蹕之祭에 臣下와 和答한 詩를 모아 內閣이 分年編次한 것이다. 正祖 20년까지는 모아서 整理字로 印頒하고 20년 이후의 것은 추가 편집하게 하였다.[120] 〈鏤板考〉(7권)의 편찬경위를 보면, 正祖 2년에 諸道에 下諭하여 公私所藏의 刊書와 板本을 살펴 開錄하고 內閣이 그 存佚을 상고하여 綱目을 구비하였다. 正祖 20년에 다시 閣臣 徐有榘가 왕명을 받아 中外藏板을 조사하고 分門類次하여 목록으로 편성하였다.[121] 〈春秋左氏傳〉(28권)은 招啓文臣 李書九 등이 朱子의 通鑑綱目例를 모방하여 엮었다. 杜預와 林堯叟 二家의 合註를 刪繁補闕하여 經傳을 27권으로 엮고 卷首에는 紀年圖, 地圖, 世系圖의 3圖와 類例 및 國名譜, 人名譜의 2譜를 실었다. 諺讀은 正祖 春邸時 春坊 徐有臣이 訂正했던 柳希春 所正本을 李晩秀·尹光顔이 重訂을 하였

(113) 《群書標記》(影印本) pp. 104-106
(114) 윗책 pp. 106-107
(115) 윗책 pp. 323-324
(116) 윗책 pp. 115-121
(117) 윗책 pp. 121-123
(118) 윗책 pp. 327-329
(119) 윗책 pp. 329-330
(120) 윗책 pp. 232-247
(121) 윗책 pp. 339-340

다.[122] 正祖 21년에는 〈星壇享儀〉(1권)와 〈五倫行實圖〉(5권)가 편찬되고 正祖 22년에는 〈五經百篇〉(5권)이 완성되었다. 〈星壇享儀〉(1권)는 靈星과 壽星 즉 二星祀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일차 편집하고, 老大臣과 儒臣들의 獻議를 모은 다음, 다시 검토 선정을 하여 편집한 것이다.[123] 〈五倫行實圖〉(5권)는 閣臣 沈象奎가 正祖의 명을 받아 世宗朝 集賢殿 學士들이 엮은 〈三綱行實圖〉와 中宗朝 金安國이 지은 〈二倫行實〉을 수정 합본하고 證訂諺譯한 것이다.[124] 〈五經百篇〉(5권)은 內閣이 易, 書, 詩, 春秋, 禮記의 諸本을 널리 수집하고 세밀하게 校準한 뒤 正祖 18년 편집에 착수하여 이듬해 완성하였다.[125] 正祖 24년에는 6종의 도서가 편찬되었다. 첫째, 科體類의 〈關北賓興錄〉(3권)과 〈關西賓興錄〉(3권)의 편찬을 들 수 있다. 전자는 正祖 21년에 關北에서 文武科를 실시하여 80인을 선정했는데, 內閣이 이들의 試券榜目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126] 후자는 正祖 23년에 關西道臣이 추천한 經旨에 익숙한 金道游등 3인에게 五經四書의 疑義 62條를 條對케 하고 이듬해 內閣에서 편집한 것이다.[127] 둘째, 傳記類의 〈梁大司馬實記〉(10권)와 〈人物考〉(130권)가 편찬되었다. 전자는 正祖가 內藏文集 및 倡儀錄을 內閣에 내리고 直閣 金近淳에게 梁大樸의 實紀를 편찬하게 하고 그의 아들 慶遇, 亨遇의 詩文을 부록으로 붙였다.[128] 후자는 종래 故相 李宜顯이 편찬한 〈人物考〉가 있었으나 내용이 부족하여 柳馨遠의 「輿地志」, 金堉의 「海東名臣錄」, 宋成明의 「國朝名臣錄」, 金始煒의 「彙言」, 太常에 실린 諡狀, 歷代諸史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內閣이 편집한 것이다.[129] 세째, 〈尊周彙編〉(20권)이 편찬되었다. 이책은 〈國朝寶鑑別編〉에 실린 尊周錄의 미비점을 메우기 위해 兵曹參議 李義駿, 前府使 成大中에게 명하여 公私의 乘牒에 기록된 것을 널리 수집하게 하고 春秋官으로 實錄을 상고하게 하였으며 內閣으로 日省錄, 起居注 등 무릇 尊攘文字에 관한 자료를 類別로 編次하게 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거하여 前參判 李書九, 檢書官 成海應이 列朝事實은 本紀의 體를 따르고, 諸臣事實은 列傳의 체재를 답습했으며, 諸臣의 記述은 志略의 체재를 모방하여 편찬한 것이다.[130] 네째, 〈春秋註解考異〉(2권)는 正祖 20년에 〈春秋左氏傳〉(28권)을 완성한 뒤 正祖 23년에 宰臣 李書九와 檢書官 成海應이 春秋左氏傳에 관한 諸家集註 중 그 取捨與否의 考異를 편집한 것이다.[131] 正祖 24년이후 逐年增修된 도서는 4종이다. 〈植木便覽〉(4권)은 正祖 13년부터 顯隆園의 植木補土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였다.[132] 〈育英姓彙〉(34권)는 閣臣 徐有榘가 매해 應製榜眼을 分部彙編하여 正

(122) 《群書標記》(影印本) pp. 332-336
(123) 윗책 pp. 136-141
(124) 윗책 pp. 345-346
(125) 윗책 pp. 144-146
(126) 윗책 pp. 356-357
(127) 윗책 pp. 357-359
(128) 윗책 pp. 354-356
(129) 윗책 pp. 215-217
(130) 윗책 pp. 352-354
(131) 윗책 pp. 351-352
(132) 윗책 pp. 368

祖즉위년부터 正祖 19년까지 총 29권으로 편집하고 그 뒤의 것은 증수되는 대로 편집하여 완성한 것이다.[133] 〈臨軒功令〉(156권)은 功令各體에서 우수한 여러 券을 모은 것으로 正祖 즉위년부터 正祖 24년까지 포괄하였다.[134] 〈臨軒題叢〉(1권)은 正祖 御極 이후 모든 과거시험에서 御命에 의해 선정된 科題를 모아 엮은 것이다.[135]

이와같이 正祖朝 奎章閣에서 편찬된 御製와 御定書 및 一般書를 편찬서명, 편찬연도, 편찬자를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表 I〉 正祖朝 奎章閣 편찬도서

서　　명	편　찬　시　기	비　　고
宮園儀 4권	正祖 즉위년(1776)	閣臣李福源, 禮曹參議 柳義養 編摩
欽恤典則 1권	正祖 원년(1777)	御製, 有司編, 館閣臣跋
奎章韻瑞 8권	正祖 3년(1779)	閣臣 徐命膺 編次
名臣奏議要略 16권	正祖 4년(1780)	提學 金鍾秀
詩樂和聲 10권	〃	御製, 閣臣 徐命膺 編成
奏議纂要 8권	〃	閣臣等編
瓊屑糕 1권	正祖 5년(1781)	御選, 內閣待敎 徐龍輔 對校
奎章總目 4권	〃	閣臣 徐浩修 編
國朝寶鑑 68권 別編 7권	正祖 6년(1782)	趙璥, 李命植, 金煜編次, 原任大提學 李福源, 徐命膺校正：英廟寶鑑, 徐浩修：定宗朝寶鑑, 趙璥：端宗·睿宗·仁宗·景宗朝寶鑑, 鄭昌世：世祖寶鑑, 金魯鎭：成宗朝寶鑑, 洪良浩：中宗朝寶鑑, 徐有隣：明宗朝寶鑑, 閔鍾顯：仁祖朝寶鑑, 金煜：孝宗朝寶鑑, 李命植：顯宗朝寶鑑, 內閣稟裁
奎章閣志 2권	正祖 8년(1784)	閣臣 徐命膺奉敎纂
列朝羹墻錄 8권	正祖 9년(1785)	御編, 大臣 李福源總裁. 館閣諸臣 分編纂修
文苑黼黻 12권	正祖 11년(1787)	御編, 內閣待敎 李崑秀 校正
金忠壯遺事 5권	正祖 13년(1789)	內閣分編, 勘校
武藝圖譜通志 5권 總譜 1권	正祖 14년(1790)	內閣 檢書官 李德懋等. 壯勇營將官 白東脩等 編纂, 檢書官 朴齊家 繕寫
瓊林聞喜錄 3권	正祖 15년(1791)	內閣編次
論語講義 5권	〃	御製 抄啓文臣 徐瀅修, 徐有榘 編次
訥齋集 6권	〃	閣臣 徐榮輔 奉命編次
大學講義 3권	〃	御製 抄啓文臣 徐瀅修, 徐有榘 編次
孟子講義 4권	〃	〃
尙書講義 8권	〃	〃
林忠愍實紀 5권	〃	閣臣 尹行恁 奉命纂
資治通鑑綱目講義 10권	〃	御製, 抄啓文臣 沈晋賢 等 編次
莊陵配食錄 2권	〃	內閣·弘文館 編次
左傳講義 1권	〃	御製, 抄啓文臣 徐有榘 編次
周易講義 5권	〃	御製, 閣臣 및 抄啓文臣 編次
秋官志 10권	〃	內閣裒輯, 判書 金魯鎭, 正郎 朴一源 編次
嶠南賓興錄 2권	正祖 16년(1792)	道臣 및 閣臣 奉命編

(133) 《群書標記》(影印本) pp. 365-367
(134) 윗책 pp. 368-370
(135) 윗책 pp. 247-248

서 명	편 찬 시 기	비 고
詩經講義 9권	正祖 16년(1792)	御製, 招啓文臣 洪仁浩, 徐有榘, 金熙朝 等 編次
詩觀 560권	〃	御選, 內閣編
關東賓興錄 5권	正祖 17년(1793)	閣臣 奉命編次
奎章全韻 2권	正祖 18년(1794)	抄啓文臣 李書九 等, 檢書官 李德懋 編役
城制圖說 3권	〃	閣臣 徐榮輔 等 裒輯
耽羅賓興錄 1권	〃	內閣編
史記英選 6권	正祖 19년(1795)	御選, 閣臣, 抄啓文臣 等 輪回對校
永興本宮儀式 2권	〃	閣臣 徐浩修, 徐榮輔 編次
李忠武全書 14권	〃	閣臣 尹行恁 奉命編輯
整理儀軌通編 10권	〃	儀軌堂上 李晩秀, 整理堂上 尹行恁 編成
豊沛賓興錄 2권	〃	內閣編
咸興本宮儀式 2권	〃	閣臣 徐浩修, 徐榮輔 編次
賡載軸 48권	正祖 20년(1796)	內閣分年編次
鏤板考 7권	〃	內閣編次 徐有榘再編
春秋左氏傳 28권	〃	原編：抄啓文臣 李書九編次. 諺讀：徐有臣 訂正, 抄啓文臣 李晩秀, 尹光顔重訂
星壇享儀 1권	正祖 21년(1797)	館閣諸臣編次
五倫行實圖 5권	〃	閣臣 沈象奎 證訂諺譯
鄕禮合編 3권	〃	親撰編校. 閣臣 參伍看詳
杜律分韻 5권	正祖 22년(1798)	御選, 閣臣 李晩秀, 沈象奎 等 校對
五經百篇 5권	〃	內閣編
陸律分韻 39권	〃	御選, 閣臣 李晩秀, 沈象奎 等 校對
中庸講義 6권	〃	御製, 招啓文臣 徐瀅修, 李魯春, 編次
大學類義 20권	正祖 23년(1799)	御選, 新舊選招啓文臣：分編謄批 湖南經義功令生, 會同校閱, 招啓文臣 徐瀅修, 尹光顔：再校編成
弘齋全書 191권	〃	御製合編, 一次：徐浩修, 李晩修, 金祖淳, 李存秀 등 編次. 二次：徐榮輔, 鄭大容, 沈象奎, 金近淳 등 編次
關北賓興錄 3권	正祖 24년(1800)	關北道臣蒐集, 館閣諸臣 編次
關西賓興錄 3권	〃	關西道臣蒐集, 內閣編次
梁大司馬實紀 10권	〃	奎章閣直閣 金近淳編次
人物考 130권	〃	閣臣等 編摩
尊周彙編 20권	〃	兵曹參議 李義駿, 前府史 成大中, 春秋館, 內閣 編輯, 前參判 李書九, 檢書官 成海應 修潤
周公書 9권	〃	御編, 閣臣 李晩修, 沈象奎, 抄啓文臣 徐瀅修, 洪奭周等 分編校正
朱子書節約 20권	〃	御編, 湖南經工生等輪校, 閣臣徐有榘訂正
春秋註解考異 2권	〃	宰臣 李書九, 檢書官 成海應 編次
植木便覽 4권	逐年增修	內閣編次
審理錄 26권	〃	抄啓文臣 洪仁浩, 金熙朝等 編次
育英姓彙 34권	〃	閣臣 徐有榘 編次
綸綍 237권	〃	閣臣等編次
日得錄 18권	〃	內閣編次
日省錄 675권	〃	奎章閣在直閣臣編次
臨軒功令 156권	〃	內閣寫校 編錄
臨軒題叢 1권	〃	閣臣等編次

2. 도서의 간행

도서 간행은 奎章閣에서 직접 행한 것이 아니고 간행 업무를 관장해 오던 校書館을 正祖 원년(1777) 12월 癸丑에 奎章閣提學 徐命膺의 건의에 의해 奎章閣의 外閣으로 합속시켰다.[136] 奎章閣에 합속된 뒤 校書館은 종래의 書籍印頒, 祝香, 印篆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한편 주자를 관리하여 印書를 할 때는 內閣의 주관하에 행하도록 하고 모든 官員은 奎章閣 관원이 겸하도록 하였다.

(1) 간행 규정

도서의 간행 규정은《奎章閣志》初草 再草를 거쳐 完成本 編次 第4 刊印의 조항으로 완비되었다.

刊印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간행 監董人의 선정과 간행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御編諸書와 御製書를 刊印하라는 왕명이 하달되었을 때 특별히 지정한 監董之人이 없으면 內閣에서 時原任閣臣을 列書하여 입계한다. 왕이 지정한 監董人이 刊印을 주관한다. 刊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活字요 하나는 鏤板이다. 鏤板인즉 活字本을 翻刻하거나 寫字官이 淨寫하여 入梓하는데 監董閣臣이 外閣에 나아가 匠人들을 모아 工役을 마친다. 활자로 인출하는 것은 監董閣臣이 壬辰字, 丁酉字, 壬寅字 가운데 어느 활자로서 간행할 것인가를 稟旨한다. 丁酉字와 壬寅字(再鑄韓構字)로 印出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閣臣이 친히 內閣에 가서 활자를 外閣으로 옮긴 뒤에 간행을 한다. 간행이 끝나면 활자는 다시 內閣으로 환장한다.」[137]

왕이 지정한 監董之人이 없으면 시원임 각신 가운데 列書하여 왕의 재가를 거친 뒤 선정된 사람이 간행을 주관하였다. 간행방법은 木板이나 활자중에서 결정하였다. 木板으로 할 때는 직접 寫字官이 써서 板下本에 새기거나 活字本을 뒤집어 새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활자로 할 때는 여러 활자중에서 왕명에 의해 선정되는 활자로 인쇄를 하였다. 다만 內閣에 소장된 활자인 경우 內閣에서 外閣으로 옮겨 간행하고 작업이 끝나면 內閣으로 다시 돌려 놓는 방식을 취하였다.

(2) 간행 경위

도서는 위의 간행규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鏤板과 活字에 의해 간행되었다. 鏤板을 하는 경우 활자본을 번각할 때는 중앙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활자본을 인출한 뒤 지방에 몇 부를 보낸다. 지방에서는 각 관찰영이 활자본을 뒤집어 목판에 새긴다. 이로써 지방이 필요로 하는 서적의 수요를 충당토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간행된 正祖朝 活字翻刻本을 羣書標記에 의해 예시하면 아래와 같

(136)《正宗實錄》권4 正祖元年 12月 癸丑條
(137)《奎章閣志》(完成本) 編次第 4 刊印

다.[138]

〈表 II〉 正祖朝 校書館과 鑄字所 活字翻刻本

서 명	간 행 시 기	활 자 명	간행기관 및 지방번각지	
八子百選 6권	正祖 5년(1781)	丁酉字	校書館	翻刻藏板
國朝寶鑑 68권	正祖 6년(1782)	〃	〃	
國朝寶鑑別編 7권	〃	〃	〃	
訥齋集 6권	正祖 15년(1791)	〃	校書館	湖南觀察營翻刻
朱書百選 6권	正祖 18년(1794)	〃	鑄字所	湖南, 嶺南, 關西營翻刻
史記英選 6권	正祖 19년(1795)	〃	鑄字所[139]	湖南, 嶺南, 關西營翻刻
陸奏約選 2권	正祖 21년(1797)	〃	鑄字所	湖南營翻刻
雅 誦 8권	正祖 23년(1799)	壬辰字	鑄字所	翻刻

〈表 II〉를 보면 8종의 서적이 지방에서 번각되었는데 歷史類가 2종 文集類가 6종이다. 中央印書 기관인 校書館과 鑄字所에서 印出된 活字本을 湖南, 嶺南, 關西 등의 地方觀察營에서 번각하여 서적을 유통시켰음을 알 수 있다.

鏤板의 방법중 또 하나는 寫字官이 板下本을 깨끗이 써서 板木에 반대로 새겨 간행해 내는 것이다. 校書館과 鑄字所에서는 活字本을 印出하는 이외에도 방대한 권질이거나 수요와 공급이 많은 서적에 대해서는 板木에 새겨 간행하였다.

1796년(正祖 20)에 徐有榘가 奉命하여 編錄한 鏤板考에는 당시 公私 所藏의 刊行書目과 藏板을 수록하고 있는데[140] 이를 참고하여 校書官과 鑄字所册板을 조사하면 아래와 같다.

〈表 III〉 正祖朝 校書館과 鑄字所 册板

서 명	간 행 시 기	책 판 소 재 지
欽恤典則 1권	正祖원년(1776)	校 書 館
宮 園 儀 4권	正祖 3년(1779)	〃
國朝寶鑑 68권	正祖 5년(1781)	〃
國朝寶鑑別編 7권	〃	〃
八子百選 6권	〃	鑄 字 所
華東正音通釋韻考 2권	〃	〃
字恤典則 1권	正祖 7년(1783)	校 書 館
大典通編 6권	正祖 9년(1785)	〃
二程全書 68권	〃	〃
童蒙先習 1권	〃	〃
書社輸誦 1권	〃	〃
千 字 文 1권	〃	〃
奎章全韻 2권	正祖 16년(1792)	鑄 字 所

(138) 《群書標記》(影印本) 1970
(139) 《正宗實錄》 권45 正祖 20年 12月 丙申條
(140) 徐有榘等奉命撰 《鏤板考》(影印本 ; 서울 寶蓮閣 1968)

〈表 Ⅲ〉을 보면 小學類 4종, 政書類 3종, 編年類 1종, 儒家類 2종, 總集類 1종이다. 이 중 小學類와 政書類는 수요가 많은 서적이다. 編年類의 〈國朝寶鑑〉(68권)과 〈別編〉(7권)은 권질이 방대하여 1781년(正祖 5)에 木板本으로 간행하고 이듬해는 丁酉字本으로 인출하였으며 활자 인본을 地方觀察營에서 다시 翻刻하였다. 儒家類의 〈二程全書〉는 방대한 권질이면서도 중요한 儒家書이고 〈書社輸誦〉은 李縡가 周敦頤, 程顥, 程頤 등 濂洛諸賢의 글중에서 학문에 필요한 것을 간추려 엮은 유가서로 학자들 사이에 많이 읽혀졌다. 總集類의 〈八子百選〉은 1781년에 唐·宋 八大家의 문장 중에서 정수가 될만한 것을 選集하여 丁酉字로 印出하고 이를 지방에서 翻刻하였으며 중앙에서는 다시 木板에 새겨 널리 閱覽시켰다.

활자로 印出할 때는 壬辰字 丁酉字 壬寅字(再鑄韓構字) 중 왕명에 의해 결정되는 활자를 선정했다. 壬辰字는 英祖 48년(1772)에 正祖가 東宮으로 있으면서 英祖의 윤허를 받아 주성한 것이다. 甲寅字 所印의 心經과 萬病回春을 字本으로 하여 동년 11월에 15만자를 初成하였으며 〈易學啓蒙集箋〉을 初印 廣布한 뒤 芸閣에 소장한 활자이다.[141] 丁酉字는 정조 원년(1777)에 전 平安監司 徐命膺이 왕명을 받아 甲寅字를 字本으로 15만자를 더 鑄成한 것이며, 이는 內閣에 두고 사용하였다.[142] 壬寅字는 正祖 6년(1782)에 平安監司 徐浩修에게 명하여 8만여자를 주성한 것으로 이도 역시 內閣에 備藏하였다.[143] 壬辰字가 선정되면, 이 활자는 芸閣에 두고 사용했기 때문에 芸閣(즉 外閣)에서 직접 간행하며, 丁酉字와 壬寅字가 선정되면, 이는 內閣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內閣에 있는 활자를 外閣에 옮겨 간행하고 印役이 끝나면 內閣에 옮겨 소장하였다.

이 방법은 正祖 즉위년부터 正祖 17년까지 그대로 사용되다가 正祖 18년부터 상황이 조금 변화된다. 이해에 正祖는 昌慶宮의 舊弘文館을 수리하여 內閣에 소장되어 있던 鑄字를 옮기고 鮮初 鑄字所의 명칭을 복구시키도록 명하였다.[144] 이듬해 봄에는 鑄字所가 왕명을 받아 正祖 16년에 造成된 木活字인 生生字를[145] 字本으로 整理字 30여만자를 鑄成하였다. 이 활자로 整理儀軌, 志喜賡載軸, 賡載詩와 御製奎章全韻을 간행하고, 板本은 鑄字所에 보관했으며, 正祖 20년 12월에는 御定書의 活印을 鑄字所에서 주관하게 하였다.[146] 이렇게 해서 正祖 18년부터는 內閣의 주관하에 校書館 또는 鑄字所에서 간행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과정에 따른 正祖朝 활자 印出 서적 및 간행기관을 群書標記[147]와 朝鮮王朝實

(141) 《戰國策國語》 권21 卷末識語 및 易學啓蒙集箋末尾 徐命應跋文
(142) 《正宗實錄》 권4 正祖 元年 8月 乙未條 ; 卷39 正祖 18年 正月 壬子條
(143) 윗책 권44 正祖 20年 3月 癸亥條 및 《國語》(整理字本) 卷末 所添 鑄字事實
(144) 尹定鉉 〈鑄字事實〉; 增補文獻備考 권 220 職官考 7 校書館條
(145) 《正宗實錄》 권35 正祖 16年 6月 丙申條 ; 正祖 권44 20年 3月 癸亥條; 羣書標記 御定人瑞錄 참조
(146) 윗책 권45 20年 12月 丙戌條
(147) 《群書標記》(影印本)

錄[148]에 의해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 IV〉 正祖朝 活字本

서 명	간 행 시 기	활 자 명	간 행 기 관
原續明義錄 4권	正祖 원년(1776)	壬 辰 字	校 書 館
八子百選 6권	正祖 5년(1781)	丁 酉 字	〃
國朝寶鑑 68권	正祖 6년(1782)	〃	〃
國朝寶鑑別編 7권	〃	〃	〃
字恤典則 1권	正祖 7년(1783)	〃	〃
奎章閣志 2권	正祖 8년(1784)	〃	〃
弘文館志 1권	〃	〃	〃
列朝奬墻錄 8권	正祖 9년(1785)	〃	〃
文苑黼黻 42권	正祖 11년(1787)	壬 寅 字	〃
新法漏籌通義 1권	正祖 13년(1789)	丁 酉 字	〃
瓊林聞喜錄 3권	正祖 15년(1791)	壬 寅 字	〃
訥 齋 集 6권	〃	丁 酉 字	〃
林忠愍實紀 5권	〃	〃	〃
人 瑞 錄 4권	正祖 18년(1794)	生 生 字	
朱書百選 6권	〃	丁 酉 字	鑄 字 所
耽羅資興錄 1권	〃	壬 寅 字	
史記英選 6권	正祖 19년(1795)	丁 酉 字	〃 *1
李忠武全書 14권	〃	〃	
整理儀軌通編 10권	〃	整 理 字	〃
政始文程 3권	〃	壬 寅 字	
豊沛資興錄 2권	〃	〃	
賡 載 軸 48권	正祖 20년(1796)	整 理 字	〃 *2
御製奎章全韻 2권	〃	〃	〃 *3
五倫行實圖 5권	正祖 21년(1797)	〃	〃 *4
陸奏約選 2권	〃	丁 酉 字	〃
杜律分韻 5권	正祖 22년(1798)	整 理 字	
陸律分韻 39권	〃	〃	
太學恩杯詩集 6권	〃	〃	〃
杜陸千選 8권	正祖 23년(1799)	丁 酉 字	〃 *5
雅 誦 8권	〃	壬 辰 字	〃

〈表 IV〉를 보면, 29종의 도서가 활자로 간행되었다. 주제별로 나누면 經部는 小學類 1종, 史部는 編年類 1종, 雜史類 2종, 鈔史類 1종, 奏議類 1종, 傳記類 2종, 職官類 2종, 政書類 2종으로 11종, 子部는 儒家類 2종, 天文算法類 1종으로 3종, 集部는 總集御製 3종, 總

(148) 表 IV중 *1 *2 *3 *4 *5는 朝鮮王朝實錄중에서 인용한 것임
*1: 《正宗實錄》 권45 正祖 20年 12月 丙申條
*2: 윗책 권45 正祖 20年 12月丙戌條
*3: 윗책 권45 正祖 20年 12月 丙戌條
*4: 윗책 권47 正祖 21年 7月 丁亥條
*5: 윗책 권47 正祖 23年 12月 辛亥條

集一般 2종, 科體 4종, 別集御製 1종, 別集一般 4종으로 14종이다. 이들 서적은 正祖 원년부터 正祖 17년까지는 校書館에서 壬辰, 丁酉, 壬寅字로 활인되었다. 正祖 18년 이후는 鑄字所에서 주로 간행을 하였는데 7종은 기관의 명시가 없다. 활자는 壬辰, 丁酉, 壬寅, 生生, 整理字가 사용되었다. 鑄字所印出 서적은 10종이며 壬辰, 丁酉, 整理字를 사용하였다. 이중 正祖 23년(1799)에 鑄字所가 壬辰字로 印出한 雅誦 8권이 있다. 壬辰字는 校書館에 소장된 활자이다. 왕명에 의해 鑄字所에서 印出을 맡았으므로 校書館에 있는 壬辰字를 鑄字所로 옮겨 간행하고 印役이 끝난 뒤에는 外閣에 還藏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이 鑄字所가 복구되기 이전 內閣에 소장한 활자를 校書館으로 옮겨 간행하고 다시 內閣으로 還藏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황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

三. 편찬·간행서의 주제별 분석

奎章閣에서 편찬, 간행된 서적을 經, 史, 子, 集으로 나누어 그 자료의 성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經 部

經部는 總經類 1종, 易類 1종, 書類 1종, 詩類 1종, 禮類 1종, 春秋類 3종, 四書類 5종, 小學類 5종으로 18종이 편찬 간행되었다.

總經類는 易, 書, 詩, 春秋, 禮記의 5經 中에 중요부분을 百篇으로 선정한 〈五經百篇〉(5권)이 있는데, 이책은 활자가 크고 行의 上段에 註釋이 붙어 治經專門하기에 편리한 자료이다. 易·書·詩類는 招啓文臣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講義條問 중에 잘된 것을 뽑은 〈周易講義〉(5권), 〈尙書講義〉(8권)와 〈詩經講義〉(9권)가 엮어 졌는데 儒臣들의 모범적 강의록으로 교육자료의 가치가 크다. 禮類는 歷代 鄕飮之儀를 모아 會通한 〈鄕禮合編〉(3권)이 편간되었는데, 正祖가 직접 編校한 觀俗制禮의 標品으로 禮俗에 참고되는 좋은 자료이다. 春秋類는 〈左傳講義〉(1권), 〈春秋左氏傳〉(28권)과 〈春秋註解考異〉(2권)의 編撰本이 있다. 春秋는 孔子가 天下萬世를 위해 大義를 밝힌 책이다. 正祖는 春秋三傳中에 春秋左氏傳이 國史部分을 가장 상세하게 엮은 것으로 평하였다. 文臣의 勸學用 도서로서 〈左傳講義〉(1권)를 엮어 左傳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春秋左氏傳〉(28권)은 綱目式의 체재를 따서 尊經之體를 밝혔으며, 諸家註釋의 취사를 밝힌 〈春秋註解考異〉(2권)를 내놓아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四書類는 講義條問中에서 선정된 〈論語講義〉(5권), 〈大學講義〉(3권), 〈孟子講義〉(4권), 〈中庸講義〉(3권)의 4종과 〈大學類義〉(20권)가 있다. 전자인 4종의 講義條問은 학술의 정도와 聖經의 수호를 위해 四書의 요체가 될만한 精粹를 뽑아 엮은 교육용 자료이며, 후자는 大學의 여러 註釋書 중 宋代 學者 眞德秀의 「大學衍義」와 明代 學者 丘濬의 「大學衍義補」를

토대로 三綱領 八條目의 해석을 새로운 차원으로 시도한 大學 註釋書이다. 小學類에는 韻書와 蒙求書가 있다. 韻書는 〈奎章韻書〉(8권)와 〈奎章全韻〉(2권) 및 〈正音通釋〉(2권)이 있으며, 蒙求書는 〈千字文〉(1권)과 〈童蒙先習〉(1권)이 있다. 〈奎章韻書〉(8권)는 奎章閣이 正祖의 명을 받아 禮部韻略이하 모든 韻書를 참고한 뒤 四聲譜, 音韻, 樂韻, 古韻의 4目으로 편집한 것인데 종래의 모든 韻書를 시정 보완했던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奎章全韻〉(2권)은 모든 韻書를 분석하여 四聲의 체계로 편집하고 諺釋을 하였으므로 中國音과 우리나라 漢字音 연구에 모범이 되는 좋은 자료이다. 〈正音通釋 ; 일명 華東正音通釋韻考〉(2권)는 朴性源이 편집한 운서로 전래의 三韻通考를 增入한 것에 불과하여 소략한 점이 있으나 소리와 문자의 일원화를 도모한 것으로 국어학에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蒙求書인 〈千字文〉(1권)과 〈童蒙先習〉(1권)은 조선조 서당에서 학동의 교재로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간행된 교육용 도서이다.

2. 史 部

史部는 編年類 3종, 雜史類 2종, 鈔史類 1종, 詔令類 1종, 奏議類 3종, 傳記類 6종, 職官類 3종, 政書類 11종, 產業類 1종, 書誌類 2종으로 33종이 편찬 간행되었다.

編年類는 歷代 闕漏된 〈國朝寶鑑〉(68권) 및 〈別編〉(7권)을 편찬·간행하여 後王啓道의 자료가 완비되었다. 〈日省錄〉(675권)은 국정의 제반사항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이며, 조선조 후기 실록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招啓文臣의 歷史書 講義書인 〈資治通鑑綱目〉중에서 講義條問으로 뽑은 〈資治通鑑講義〉(10권)가 엮어졌다. 雜史類의 〈原續明義錄〉(4권)은 世孫(正祖)의 代理聽政을 저해한 무리들을 誅討한 정당관계 자료이고, 〈列朝羹墻錄〉(8권)은 列朝의 聖訓을 채록한 것으로 治法과 政謨를 참고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龜鑑書이다. 鈔史類의 〈史記英選〉(6권)은 史馬遷의 史記중에서 切要한 것을 뽑아 엮은 역사선집이다. 詔令類의 〈綸綍〉(237권)은 正祖의 絲綸을 모은 것으로 정조조 정치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奏議類는 3종의 편간본이 있다. 〈奏議纂要〉(8권)와 〈名臣奏議要略〉(16권)은 중국과 조선중에서 名人들의 奏議를 모은 것이요, 〈陸奏約選〉(2권)은 中國 陸贄의 奏議를 모은 것으로 모두 治敎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傳記類는 別傳과 叢傳으로 나누어진다. 別傳의 〈金忠壯遺事〉(5권), 〈林忠愍實記〉(5권)와 〈梁大司馬實記〉(10권)는 역대에 공적이 있으나 그 공적이 글로서 갖추어 지지 못한 사람들의 전기를 모아 엮은 것으로 시문과 행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叢傳을 보면, 〈人物考〉(130권)는 李宜顯이 편집한 人物考의 부족한 점을 보충한 것이다. 宗室, 輔相, 卿宰, 侍從, 儒林, 文苑, 武將, 功臣, 外戚, 庶僚, 蔭官, 忠孝, 黨錮, 遺逸, 方技, 孝餘者 등을 찾아보는 데 꼭 필요한 자료이다. 〈莊陵配食錄〉(2권)은 端宗의 忠節功臣 236인을 수록한 인명록이다. 正祖가 忠微를 顯表하고 光廟(世祖)의 達權扶經의 은미한 뜻을 揄揚하여 역사의 시비를 바로 잡은 점에서 주목할 만할 가치를 지닌다. 〈御定人瑞

錄〉(4권)은 正祖 19년을 人瑞의 해로 정하고 축하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당시 잔치에 참석한 壽考者의 人名錄으로 修德歸仁之政의 증거가 되는 자료이다. 職官類는 官制의 서적 3종이 이루어졌다. 〈奎章閣志〉(2권)는 奎章閣의 제도 및 의식을 참조하는 데 필수적 자료이며, 〈秋官志〉(10권)는 正祖朝 刑曹의 소관 사례 및 재판의 실례를 참고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弘文館志〉(1권)는 弘文館應敎 李魯春의 편찬본으로 弘文館의 연혁을 상고할 때 도움이 되는 서적이다. 政書類는 11종이 있는데 通制 1종, 典禮 5종, 財政 1종, 軍制 1종, 刑政一般 1종, 推鞫案 1종, 敎育 1종이다. 通制의 〈大典通編〉(6권)은 전존되는 經國大典 이하의 여러 法典을 檢校修補하여 편람과 考據에 편리하도록 엮은 掌故之書이다. 典禮에 관한 서적으로는 正祖의 生父 莊獻世子의 景慕宮과 永祐園의 儀式節次를 적은 〈宮園儀〉(4권)와 永祐園을 顯隆園이라 고치고 正祖가 行次하였을 때의 儀節을 적은 〈整理儀軌〉(10권)가 있다. 咸興本宮과 永興本宮의 儀式節次를 수정한 〈咸興本宮儀式〉(2권)과 〈永興本宮儀式〉(2권)이 있으며 靈星과 壽星 즉 二星의 祀典儀式에 관한 〈星壇享儀〉(1권)가 있어서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財政의 〈字恤典則〉(1권)은 饑民求濟의 節目으로 正祖朝 設賑賙求의 경제정책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軍制書인 〈城制圖說〉(3권)은 中國의 여러 城制書와 東國의 여러 城制書를 함께 엮어서 두나라의 城制를 비교할 수 있고, 또한 東國城制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특색있는 자료라 여겨진다. 刑政一般의 〈欽恤典則〉(1권)은 朝鮮朝 법도에 어그러진 여러 刑具를 釐正하여 죄수에 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서적으로 종래의 인습적 폐단을 시정하여 인본주의적 行刑에 선구가 될만한 자료이다. 推鞫案의 〈審理錄〉(26권)은 正祖朝 刑獄決案의 편집서로 刑獄과 관련된 당시 사회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敎育의 〈育英姓彙〉(34권)는 正祖가 道學있는 선비를 뽑기 위해 시행한 應製榜眼을 수집한 것으로, 正祖朝 科試政策을 살피는데 보탬이 되는 자료이다. 産業類의 〈植木便覽〉(4권)은 莊祖(思悼世子)의 陵인 顯隆園의 植木補土에 관한 자료집이다. 書誌類는 2종이 있는데, 〈奎章總目〉(4권)은 奎章閣의 中國本 書庫인 皆有窩의 書目으로, 정조 초기 中國本의 소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書誌道具이며, 〈鏤板考〉(2권)는 조선조 후기 公私 소장의 刊書와 板本有無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册板書目이다.

3. 子 部

子部는 儒家類 9종, 兵家類 1종, 天文算法類 1종, 藝術類가 1종으로 12종이 편찬 간행되었다.

儒家類는 9종의 서적이 있다. 〈瓊屑糕〉(1권)는 正祖가 瓊山의 大學衍義補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린 것으로 經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에게 필요하다. 〈朱書百選〉(6권)은 朱熹의 書牘을 精選한 것이요, 〈朱子書節約〉(20권)은 朱子書 중에 중요한 글만을 선정한 것으로 모두 朱子의 유가사상을 이해하는 데 첩경이 되는 필독서이다. 〈周公書〉(9권)는 周公의 모든 기록

을 뽑아 엮은 것이다. 周朝의 제도 및 문화를 이룩한 周公의 사상적 기반을 돌아 볼 수 있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二程全書〉(68권)는 宋代 程明道와 程伊川의 全書를 합본한 책으로 朱子의 저서와 함께 儒家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필수서이다. 〈書社輸誦〉(1권)은 李縡가 성리학 교육을 위해 편찬한 교과서이다. 당시 여러 갈래로 세분된 성리학파 중에서 진보적 입장을 고수했던 李縡 학파의 사상과 연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尊周彙編〉(20권)은 尊周에 관한 모든 기록을 모아 편찬한 것이며 당시 對明관계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五倫行實圖〉(5권)는 世宗朝 三綱行實圖와 中宗朝 二倫行實圖를 수정하여 합본한 것으로, 조선조 유교사상에 기초한 가족, 사회, 국가적 윤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日得錄〉(18권)은 奎章閣이 正祖의 語錄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뽑아 엮은 것이다. 당시의 정사, 인물, 문학, 평론 등을 담고 있어 연구적 가치가 큰 자료이다. 兵家類의 〈武藝圖譜通志〉(5권)와 〈總譜〉(1권)는 武藝諸譜와 武藝新譜를 참고하여 무예를 집대성한 책이다. 무예사, 무기 등의 연구는 물론 諺釋을 붙여 국어학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다. 天文算法類의 〈新法漏籌通義〉(1권)는 매년 24절후와 매일 12시간의 시각 변동을 기록한 책으로 正祖朝 과학적 節候法을 참조하는데 필요하다. 藝術類의 〈詩樂和聲〉(4권)은 正祖가 직접 찬술한 樂書이다. 역대 모든 樂書를 고증하여 論說을 붙인 조선조 가장 논리가 정연한 樂志이다.

4. 集 部

集部는 總集의 御製 4종, 一般 3종, 科體 10종, 別集의 御製 1종, 一般 4종으로 22종이 편찬 간행되었다. 總集의 御製는 4종의 도서가 있다. 〈弘齋全書〉(191권)는 正祖 詩文集의 제일차 편찬본이다. 正祖가 이룩한 근대 문예부흥의 사상사적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御製集이다. 〈太學恩杯詩集〉(6권)은 正祖가 成均館에 내린 御製文과 太學生들이 箋文을 올려 사례한 글을 모은 것이며, 正祖朝 학문장려의 일면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된다. 〈文苑黼黻〉(12권)은 국초이래의 館閣文字를 모은 것으로 館閣에서 쓰이던 문체의 양식 및 조선조 名家의 수려한 문장을 일람할 수 있는 자료이다. 〈賡載軸〉(48권)은 正祖 臨御 이후 국가에 경사스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왕과 여러 신하가 그 감회를 읊은 詩로 正祖朝 漢詩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總集一般은 3종이 있는데, 〈詩觀〉(560권)은 中國古代詩集부터 明까지의 유명한 詩集을 선집한 것이다. 各代의 정통적 詩史를 일람해 본 것으로 문학사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八子百選〉(6권)은 唐宋 八大家의 문장중에서 藝苑의 模楷가 될만한 것을 百篇 선집한 것으로, 唐宋의 문장을 연구하는 이는 꼭 거쳐야 할 필독서이다. 〈杜陸千選〉(8권)은 唐 杜甫와 宋 陸游의 近體詩 千首를 선집한 것이다. 正祖朝 詩風의 선호와 文運振作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고 中國 名家의 詩를 참고하는데 필요한 책이다. 科體에 관한 것은 〈瓊林聞喜錄〉(3권), 〈嶠南賓興錄〉(2권), 〈關東賓興錄〉(5권), 〈耽羅賓興錄〉(1권),

〈豊沛賓興錄〉(2권), 〈關北賓興錄〉(3권), 〈關西賓興錄〉(3권), 〈正始文程〉(3권), 〈臨軒功令〉(165권), 〈臨軒題叢〉(1권)의 10종이 있다. 正祖는 중앙에서의 科試는 물론 수시로 道試를 실시하여 각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위의 科文들은 이때의 절차 및 응시자들의 詩文을 모은 것으로, 正祖朝 문체정책이 잘 반영된 모범이 되는 서적들이다. 別集御製의 〈雅誦〉(8권)은 朱子의 시와 문장을 뽑아 엮은 책이다. 孔子가 刪定한 詩經에 朱子가 주석을 붙인 것으로 朱子의 사상과 문체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학습서이다. 別集一般은 4종의 편간본이 있다. 〈訥齋集〉(6권)은 訥齋 梁誠之의 詩文으로, 조선조 초기 대사상가로서의 철학은 물론 문물 및 제도적 고찰에 참고되는 부분이 많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李忠武公全書〉(14권)는 忠武公 李舜臣의 모든 유고를 모은 것이다. 임진왜란을 치루었던 명장이었던 만큼 그의 행적은 물론, 사상 및 전란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杜律分韻〉(5권)과 〈陸律分韻〉(39권)은 杜少陸과 放翁의 詩를 선정한 것으로 〈杜陸千選〉(8권)의 내용과 겹치는 것이 많으나 漢詩 연구에 필요한 자료이다.

맺 음 말

위에서 考究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奎章閣 기능의 분석적 고찰에 있어서, 奎章閣은 복합적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서 正祖朝 문예진흥의 모체가 되었다. 설립후 초기에는 왕권강화와 권력기반에 중점을 두었으나, 正祖 4년 이후 점차 초기의 제도를 繼述하고 혁신의 기풍을 조성하면서 弘文館·藝文館·承政院·司憲府·司諫院·經筵·成均館·春秋館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였다. 이에 따라 獻議·箚疏·起居·代撰·奏啓·講論·進箋·日曆作成의 일을 관장하여 右文政治의 기틀을 다졌다. 정치적 기반을 다진 뒤에는 차츰 학술적·문화적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招啓文臣과 檢書官 제도 및 도서의 편찬·간행을 들 수 있다. 학술·문화적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자 王立圖書館의 면모를 갖추고 도서의 수집·정리·보관·열람·참고·배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2) 도서의 편찬 및 간행에 있어서, 학술·문화적 기능 중에서 도서의 편찬 및 간행을 부각시키고 편찬과 간행을 독립시켜 각각 그 규정 및 경위를 고찰하였다.

도서의 편찬에 있어서, 奎章閣은 編書之法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도서를 편찬하였는데 編書之法은 御製之法과 諸書之法으로 二大別하였다. 御製는 왕이 제술한 서적이고 諸書는 王의 特敎와 臣下의 箚請에 의해 이루어진 御定書와 一般書이다. 御製之法은《奎章閣志》編次第4 會稡·繕寫條로 완비되었다. 이들 조항에 의거하여 편차된 御製는 一次는 正祖 23년, 二次는 純祖 원년에 체계적인 편찬을 시도하여 純祖 14년에「正宗大王御製弘齋全書」로 완성된다. 御製會稡·繕寫法上에는 22目으로 나누어 御製를 편차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실제의 편찬부터 간행까지는 항목의 변동이 있으니 책의 刪削增加에 따른 것이다. 弘齋全書에 편입

되거나 편입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편찬된 御製書는 15종이다. 御定書 및 一般書의 편차 규정은《奎章閣志》完成本 書籍 第5 編書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편찬된 서적은 御定書가 11종이요 一般書가 40종이다. 이들 正祖朝 편찬본은 편찬서명, 편찬연도, 편찬자를 〈表 Ⅰ〉로 제시하여 참고에 편하도록 하였다.

도서의 간행에 있어서, 도서의 간행은 奎章閣에서 직접 행한 것이 아니고 간행 업무를 관장해 오던 校書館을 奎章閣의 外閣으로 합속시켜 內閣의 주관하에 이루어 졌다. 이는《奎章閣志》完成本 編次 第4 刊印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도서의 간행은 鏤板과 活字로서 이루어 졌다. 鏤板에 의한 刊行本은 19종이 있는데, 〈表 Ⅱ〉는 活字翻刻本을, 〈表 Ⅲ〉은 寫字官이 직접 板下本을 써서 木板에 새긴 책을 例示하였다. 활자에 의해 간행된 것은 29종이며 〈表 Ⅳ〉로 예시하였다. 이 表에서는 또한 正祖 즉위년부터 正祖 17년까지와 正祖 18년 鑄字所 설치이후 변화되는 간행의 상황도 파악하였다.

(3) 편찬·간행서의 주제별 분석에 있어서, 正祖朝 奎章閣의 편찬·간행본을 주제로 나누어 그 자료적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經部 18종, 史部 33종, 子部 12종, 集部 22종으로 모든 주제분야에 걸쳐 고루 편찬·간행되었다.

둘째, 經部는 正祖가 招啓文臣을 교육하기 위해 講義條問 중에서 선정한 經書講義가 주류를 이룬다. 春秋類의 春秋左氏傳은 綱目式의 체재를 도입하여 새로운 각도로 편찬을 시도 하였고, 小學類는 조선조 가장 정확한 韻書가 편찬·간행되었다.

세째, 史部를 보면 編年類는 國朝寶鑑이 완전히 구비되고 日記體 年代紀인 日省錄이 중요한 역사자료로서 편찬되었다. 그밖의 歷史書는 綱目 및 奏議類의 선집이 이루어졌다. 傳記類는 공적이 두드러진 先祖들의 別傳과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叢傳이 편찬·간행되었다. 職官類는 官制의 자료가 구비되고 政書類는 典禮, 軍制, 刑政 분야의 자료가 갖추어졌다. 書誌類는 目錄 및 册板書目이 이루어졌다.

네째, 子部는 儒家類가 가장 많은데 正祖가 尊崇한 朱子의 선집을 비롯한 儒家의 正統書로 구성되어 있다. 藝術類 중에서는 音樂書가 정밀하게 편찬되어 조선조 가장 완벽한 樂書로 꼽히고 있다.

다섯째, 正祖의 거질 御製集은 물론 당시 古文으로 복귀하려는 문체정책과 관련하여 中國古代 名家들의 詩文選集 및 科體文이 이루어졌다.

본고는 正祖朝의 官纂書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서지적 연구중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미비한 점은 次後의 論考를 통해 기워나가기로 한다.

參 考 文 獻

姜順愛, 朝鮮 英祖朝의 圖書編撰 및 刊行에 관한 書誌的 硏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2

高橋亨, 弘齋王의 文體反正 靑丘學叢. 第7號, 1932. 2, pp. 1-14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編, 韓國圖書解題.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1

國史編撰委員會編, 朝鮮王朝實錄 卷 44-47. 影印本. 서울, 同委員會, 1970

國史編撰委員會編, 한국사 14. 서울, 同委員會, 1975.

宮闕志. 서울史料叢書第3. 서울, 서울特別市史編撰委員會, 檀紀 4290(1967)

奎章閣編, 羣書標記. 서울, 學文閣, 1970

奎章閣編, 奎章閣志 初草本(筆寫本)

奎章閣編, 奎章閣志 再草本(筆寫本)

奎章閣編, 奎章閣志 完成本. 正祖 8년(1784) 丁酉字本

奎章閣編, 奎華名選 17권 4책. 正祖 16년(1792) 韓構字本

奎章閣編, 奎華名選 16권 4책. 正祖 17년(1793) 韓構字本

奎章閣編, 內閣日曆 1249책. 正祖 3년～高宗 20년(1779～1883) 筆寫本

奎章閣編, 文臣講製節目 1책. 正祖 5년(1781) 丁酉字本

奎章閣編, 日得錄 5책. 正祖 5～11년(1771～1781) 筆寫本

奎章閣編, 日省錄 673책. 英祖 36년 12월～正祖 24년(1760, 12～1800) 筆寫本

奎章閣編, 弘齋全書 184권 100책. 純祖 14년(1814) 整理字本

金龍德, 奎章閣考 —設立事情을 中心으로—. 中央大學校論文集 第35卷 第4號, 1980, 6. pp. 12-20

金元龍, 韓國古活字槪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金學性等奉敎纂, 大典會通. 影印本. 서울, 景文社, 1980

南權熙, 奎章閣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分析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大邱, 慶北大學校大學院, 1983

達西精舍編, 蔡史 2권 2책. 哲宗 10년(1859) 後期木活字本

藤塚鄰著, 藤塚明直編, 淸朝文化東傳の硏究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末松保和, 奎章閣と奎章總目. 小田先生頌壽紀念朝鮮論叢. 1934, pp. 223-234

文化財管理局藏書閣編,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서울, 同閣, 1972

朴永俊, 弘文館考. 서울,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72

朴趾源, 燕巖集. 서울, 景仁文化社, 1974

裵賢淑, 江都外奎章閣考. 韓國圖書館・情報學會編. 圖書館學論集第 6 輯. 慶北, 同學會, 1979, pp. 53-103

白麟, 奎章閣藏書에 대한 硏究. 서울, 延世大學校大學院, 1962

白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5卷 8號. 1969, 8. pp. 8-19

白麟, 韓國圖書館史硏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四庫全書總目提要, 紀昀等奉勅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54(1965)

서울大學校圖書館編, 奎章閣韓國本總目錄 上・下. 서울, 同圖書館, 1981

서울大學校圖書館編, 奎章閣圖書韓國本圖書解題 經・子部, 史部 Ⅰ, Ⅱ, Ⅲ, Ⅳ, 集部 Ⅰ, Ⅱ

成樂熏,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pp. 219-388

徐有榘, 鏤板考. 서울, 寶蓮閣, 1968

세종대왕기념사사업회편, 國朝寶鑑, 上・下. 서울, 同事業會, 1980 수정판

宋日基, 奎章總目考 —特히 徐命膺 徐浩修父子의 活動을 中心으로—. 서울, 中央大學校大學院, 1982

辛良善, 17·8세기 官撰書를 통해본 時代相 —政治・經濟를 中心으로—. 서울, 延世大學校敎育大學院, 1974

愼鏞廈,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硏究. 奎章閣 5. 1981. pp. 59-83

俞尙根, 韓國官僚制度의 史的考察(2) —李朝時代의 官僚制度— 明大論文集 3輯. 1969, p. 14-19

李肯翊編,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六七 官職典故

李德懋, 雅亭遺稿 卷之三

李相佰, 庶孽禁錮始末. 東方學志 1. 서울,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1954, pp. 160-329

李離和, 奎章閣小考 —奎章閣志를 중심으로 본 槪觀—. 奎章閣 3. 1979, pp. 149-165

李載喆, 世宗朝 集賢殿의 機能에 관한 硏究. 서울, 成均館大大學院 圖書館學科 博士學位論文

李杏淑, 奎章閣藏書構成에 관한 硏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2

李弘稙, 國史大事典 上・下. 서울, 知文閣, 1962

鄭玉子, 奎章閣 抄啓文臣 硏究. 奎章閣 4.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p. 1-31

鄭玉子, 正祖의 抄啓文臣敎育과 文體政策. 奎章閣 6.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2. pp. 115-139

鄭亨愚, 正祖의 文藝復興政策. 東方學志 11. 서울,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1970, pp. 141-148

鄭亨愚, 朝鮮時代의 書籍政策硏究. 서울 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震檀學會編, 韓國史年表. 서울, 乙酉文化社, 1980

千寬宇, 近世朝鮮史硏究. 서울, 一潮閣, 1979

千惠鳳, 奉謨堂考. 國會圖書館報 제10卷 2號. 1973, 3, pp. 5-21

千惠鳳, 藏書閣考. 一奉謨堂의 沿革機能 및 그 藏書를 中心으로一. 東喬閔泰植博士古稀記念儒敎學論叢. 서울, 同發刊委員會, 1972, pp. 387-412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6

漢京識略, 서울史料業書 第2. 서울, 서울特別市市史編撰委員會, 1956

玄英娥, 群書標記에 關한 硏究. 서울,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1973

Huff, Elizabeth. The Asami, Library. A Descriptive Catalogu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